2023. 01. 31.(화) 11시
다산 정약용도서관 3층 세미나실

2023년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이사회

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한
건강한 남양주시 만들기

남양주시체육회
Namyangju City Sports Council

목 차

▢ 2023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 3p

▢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 69p

▢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안) …… 125p

▢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승인(안) …… 157p

▢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 승격 승인(안) …… 167p

▢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안건 상정(안) …… 173p

2023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1호	안건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2023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의결주문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1호

3.제안사유 :

2023년 체육회 각종 사업 업무계획 보고 및 수입·지출 예산(안)의 적정여부 심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4.주요골자

- 2023년 사업계획 : "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한 "건강한 남양주시" 만들기 ·스포츠 서비스 제공, 스포츠 참여 기회 증대,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
- 2023년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A)	구성비	2022년 예산 (B)	구성비	증(△)감 (A-B)
합 계	3,847,359	100%	3,652,195	100%	195,164
1.시 비 보 조 금	2,500,593	64.99%	2,428,227	66.48%	72,366
2.체 육 진 흥 기 금	74,400	1.93%	123,700	3.38%	△ 49,300
3.국 비 보 조 금	12,000	0.32%	12,000	0.32%	0
4.국 도 시 비 보 조 금	429,632	11.16%	444,278	12.16%	△ 14,646
5.도 시 비 보 조 금	16,702	0.45%	16,702	0.45%	0
6.도시교육청비보조금	113,500	2.95%	0	0%	113,500
7.시교육청비보조금	268,000	6.97%	0	0%	268,000
8.교 육 청 비 보 조 금	0	0%	135,000	3.69%	△ 135,000
9.자 체 수 입	313,701	8.15%	367,021	10.04%	△ 53,320
10.기 부 금 수 입	68,729	1.78%	75,267	2.06%	△ 6,538
11.출 연 금	50,102	1.30%	50,000	1.36%	102

5.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일반현황

남양주시체육회
Namyangju City Sports Council

1 조직 및 업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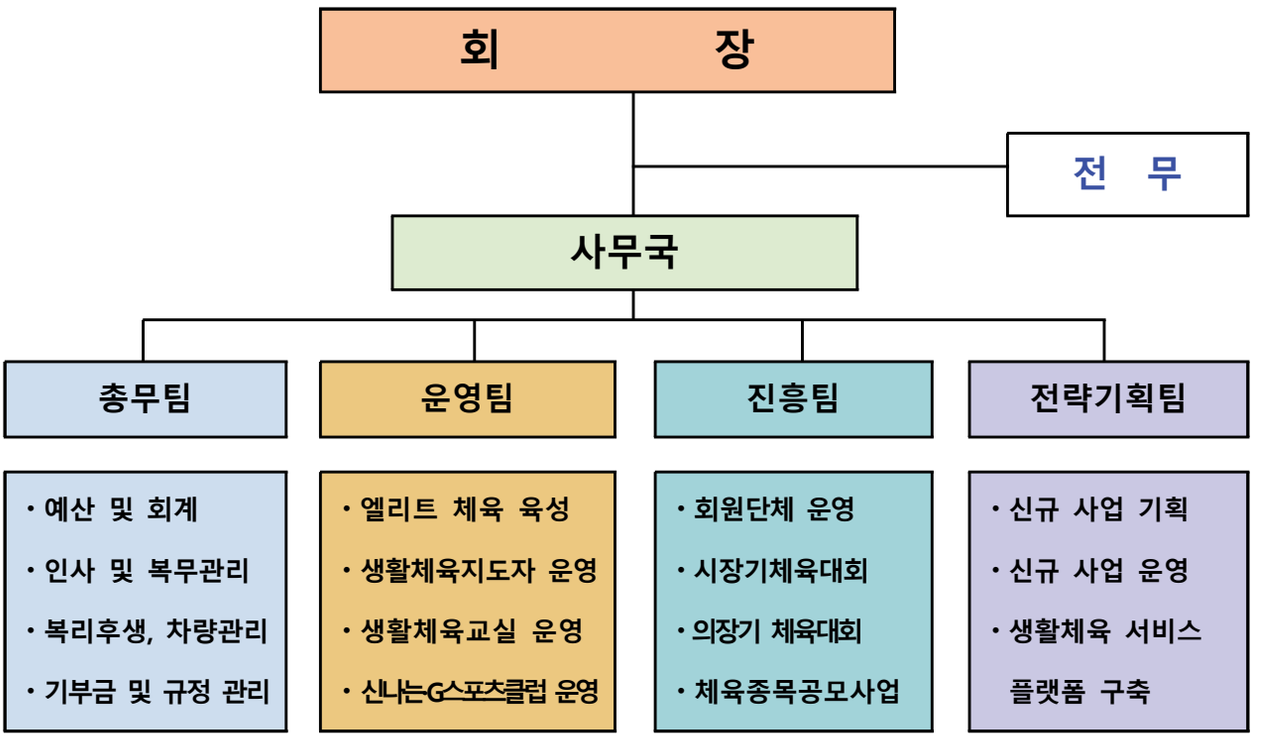

2 직원현황

○ 정 원 : 29명 / 현원 24명

구 분	계	전 무	국 장	팀 장	사무직	지도자	기능직
정 원	29명	1명	1명	4명	8명	14명	1명
현 원	24명	1명	1명	3명	9명	9명	1명

3 임원현황

○ 정 원 : 53명 / 현원 43명

구 분	계	회 장	부회장	이 사	감 사
정 원	53명	1명	9명	40명	3명
현 원	43명	1명	6명	34명	2명

(기능) 사업계획 및 예산, 규정 제·개정 등 심의

4 회원단체 현황

○ 총 괄 표

구 분	계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합 계	63개	59개	2개	2개
종목단체	47개	43개	2개	2개
읍·면·동체육회	16개	16개	-	-

○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검도회	게이트볼협회	걷기연맹	골프협회	국학기공협회
궁도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농구협회	댄스스포츠연맹	드론항공협회
배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보디빌딩협회	빙상연맹	복싱협회
볼링협회	사격연맹	산악연맹	승마협회	소프트테니스협회
수영연맹	야구소프트볼협회	우슈협회	육상연맹	족구협회
체조협회	축구협회	킥복싱협회	탁구협회	테니스협회
태권도협회	파크골프협회	패러글라이딩협회	피구연맹	합기도협회
해동검도협회	유도회	자전거연맹	씨름협회	바둑협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동계스키협회	밸리댄스협회	평내동체육회	호평동체육회
다산1동체육회	다산2동체육회	별내동체육회	별내면체육회	진접읍체육회
진건읍체육회	오남읍체육회	와부읍체육회	금곡동체육회	퇴계원읍체육회
화도읍체육회	수동면체육회	양정동체육회	조안면체육회	주짓수회 (준회원)
수중핀수영협회 (준회원)	트리클라이밍협회 (인정단체)	줄넘기연맹 (인정단체)	-	-

(기능) 본회의 해산 및 정관, 정회원단체의 가입, 사업결과 및 결산 등 심의

2023년 사업계획

남양주시체육회
Namyangju City Sports Council

남양주시체육회
Namyangju City Sports Council

스포츠 복지 실현을 통한 건강한 남양주시 만들기

생활체육 · 엘리트체육 · 삶의 질 향상

정책방향

· 운영팀 ·
시민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

· 진흥팀 ·
스포츠 참여 기회 증대

· 전략기획팀 ·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

1 시민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

○ 생활체육 부문

배 경	· 건강한 스포츠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필요 · 코로나19로 아직 움츠러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
목 표	· 전 연령층 평생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 스포츠 여가 참여기회 확대 · 스포츠를 통한 일상의 행복을 깨우는 움직임 최적화
추진내용	·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프로그램 보급 →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등 · 지역 편중 없는 광장 교실운영(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 학교체육 부문

배 경	· 운동습관 형성을 위한 생활체육 기회 제공 · 특색 있는 종목 선정으로 차별화 강화
목 표	· 스포츠클럽 개설 및 연계육성 체계 마련 · 누구나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체력 향상
추진내용	· 1인 1체육 스포츠클럽 참여 확대 → 초등스포츠클럽, 꿈나무스포츠학교, 경기스포츠클럽 등 · 주말 스포츠 활동 욕구 충족(신나는주말체육학교)

2 스포츠참여 기회 증대

○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권리) 증대

배 경	· 코로나-19로 인한 동호인 클럽 활동 제한 및 각종 대회 개최 불가로 인한 동호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저조 · 이로 인한, 동호인들의 결집력 약화가 회원단체의 존립 위협
목 표	· 각 종 대회 및 스포츠 사업 추진으로, 동호인들의 동기부여 및 신규 동호인 유입 도모
추진내용	· 다양한 계층 및 연령별 대회 개최를 통하여, 신규 동호인 유입 도모 · 동일한 형식의 종목대회 개최 지양

3 엘리트체육 경쟁력 강화

○ 엘리트체육 발굴·육성 기반강화

배 경	·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침체되어있던 우리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목 표	·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순위 상승을 위한 체계적인 대회 준비 · 관내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전문체력을 갖춘 인재 발굴 및 양성
추진내용	·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전 종목(전 체급) 참가 · 종목단체와 연계한 관내 우수선수 발굴·육성 · 소년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 우리시 선수단 지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73만 시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체육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개최하고자 함.

1 개 요

○ 기 간 : 2023. 10월 경

○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A 구장

○ 대회규모 : 경기 종목 8개, 시민참여경기 6개 종목

○ 참가인원 : 16개 읍면동 10,000여명

○ 예 산 액 : 11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 / 남양주시읍면동체육회·남양주시종목단체

2 운영계획

○ 명량 운동회 등 시민 참여 중심의 행사 진행

○ 16개 읍면동 체육회가 전부 참여 할 수 있는 경기종목 선정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 28,000천원(단체복)
· 행사운영비 : 34,200천원(트로피, 시민참여경기, 홍보현수막 등)
· 시책업무추진비 : 2,8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 16,000천원
· 단체보조금 : 24,000천원(8개 종목단체)
· 보 험 료 : 5,000천원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상호 결합을 통한 우리시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체육 발전 도모

1 개 요

○ 기 간 : 2023. 5. 11.(목) ~ 13.(토) / 3일간
○ 장 소 : 성남시 일원
○ 대회규모 : 31개 시·군 12,000여명 / 2개부(일반부, 고등부)
○ 참가인원 : 21개 종목 총 290여명(임원 66명, 선수 224명) * 2022년 기준
○ 예 산 액 : 295,730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성남시, 성남시체육회

2 운영계획

○ 훈련비, 현지경비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충분한 훈련 및 현지대회 참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훈련 및 현지격려를 통한 선수들의 사기진작 도모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 51,340천원(피복비, 차량유류비, 입장식 운영비 등)
- 여 비 : 5,120천원(현지여비)
- 업무추진비 : 7,120천원(훈련 및 현지 격려)
- 일반보상금 : 69,300천원(참가선수, 감독 수당)
- 단체보조금 : 162,850천원(출전 종목 용품비, 숙박비, 현지경비 등)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지원

◇ 경기도체육대회 우수한 성적 달성을 위한 우리시 우수선수 육성으로 남양주시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

1 개 요

○ 기 간 : 2023. 1월 ~ 4월
○ 대 상 : 관내 우수선수
○ 장 소 : 관내 체육시설
○ 예 산 액 : 293,600천원

2 운영계획

○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관내 우수선수 육성지원
○ 종목단체 직적 육성을 통한 지속발전 및 선수발굴
○ 선수 별 개인기량을 고려한 등급별 효율적 예산지원

3 예산계획

・일반보상금 : 293,600천원(우수선수 지원금)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우리시 체육발전의 기틀 마련

1 개 요

○ 기 간 : 2023. 5. 27.(토) ~ 30.(화) / 4일간

○ 장 소 : 울산광역시 일원

○ 대회규모 : 17개 시·도 11,000여명(초등, 중등부) / 36개 종목

○ 참가인원 : 11개 종목 28명 * 2022년 기준

○ 예 산 액 : 5,700천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체육회

2 운영계획

○ 격려금 지원을 통한 선수, 감독, 코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훈련 및 현지대회 격려를 통한 우리시 선수들의 애향심 고취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 340천원(유류비, 행사운영지원)
- 여 비 : 960천원(현지여비)
- 업무추진비 : 1,000천원(현지격려)
- 일반보상금 : 3,400천원(참가선수, 감독 격려금)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 전국 엘리트 체육대회에 우리시 선수들이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격려 및 참가 지원

1 개 요

○ 기 간 : 2023. 10. 13.(금) ~ 19.(목) / 7일간

○ 장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 대회규모 : 17개 시·도 30,000여명(고등, 대학. 일반부) / 49개 종목

○ 참가인원 : 10개 종목 26명 * 2022년 기준

○ 예 산 액 : 11,630천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2 운영계획

○ 참가 선수단(임원, 선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지급

○ 훈련 및 현지 대회 격려를 통한 선수들의 자긍심 고취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 610천원(유류비, 행사운영지원)
- 여 비 : 1,200천원(현지여비)
- 업무추진비 : 1,920천원(참가자 간담회 및 현지격려)
- 일반보상금 : 7,900천원(참가선수, 감독 격려금)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폐해를 예방하고 학교운동부 연계형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1 개 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연간
○ 장 소 : 관내 공공체육시설
○ 사업규모 : 3개 종목 5개 교실 100명
○ 예 산 액 : 268,000천원 * 교육청 매칭사업(134,000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교육청 / 남양주시체육회

2 운영계획

○ 종목별 엘리트 선수 육성 및 활동지원
○ 경기도교육청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종목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 관내·외 학교운동부 연계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
○ 전문지도자 배치를 통한 엘리트선수 육성 및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3 예산계획

- 인 건 비 : 101,297천원(강사수당, 일일근로 수당)
- 일반운영비 : 162,203천원(사무관리비, 대관료, 용품구입비 등)
- 업무추진비 : 4,500천원(각종 회의개최, 현지격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밝고 건강한 삶을 제공 하고자 함

1 개 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연간
○ 장 소 : 남양주시 일원
○ 대 상 : 남양주시민 누구나
○ 지도자현황 : 9명(일반 지도자 4명, 어르신 지도자 5명)
○ 예 산 액 : 429,632천원 * 국비 214,816천원, 도비 107,408천원, 시비 107,408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2 운영계획

○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교실 운영(10개 종목 38개소)
○ 탁구, 배드민턴, 스트레칭, 근력운동,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라인댄스, 요가 등

3 예산계획

・인 건 비 : 429,632천원(법정부담금, 지도활동 보험료)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 초등학생 대상 체육활동 제공으로 보편적 체육 복지 실현 및 건강증진

1 개 요

○ 기 간 : 2023. 4월 ~ 12월 / 9개월 간
○ 장 소 : 관내 초등학교 체육시설
○ 대 상 : 초등학생
○ 사업규모 : 29개교 69개 클럽
○ 예 산 액 : 113,500천원 * 교육청 56,750천원, 도비 28,375천원, 시비 28,375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 남양주시체육회

2 운영계획

○ 학교별 종목, 운영일시 등 협의를 통한 클럽 개설
○ 강사 배치 및 수업 용품 지원

3 예산계획

- 인 건 비 : 107,600천원(강사 수당)
- 일반운영비 : 5,900천원(학교별 용품구입, 클럽운영비 등)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 학생 대상 주말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증진 및 체육복지 실현

1 개 요

○ 기 간 : 2023. 4월 ~ 12월 / 9개월 간
○ 장 소 : 관내 학교 체육시설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규모 : 17개소(학교 안 15개소, 학교 밖 2개소)
○ 예 산 액 : 65,490천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 남양주시체육회

2 운영계획

○ 학교 안 프로그램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한 학교별 참가신청 접수
- 학교별 참가자 모집 및 강사배치

○ 학교 밖 프로그램
- 종목 선정 및 체육시설 협의
- 개소별 시설계약 및 프로그램 운영

3 예산계획

· 인 건 비 : 37,800천원(강사 수당)
· 일반운영비 : 26,740천원(운동용품 구입, 시설사용료 등)
· 여 비 : 500천원(현장점검)
· 업무추진비 : 450천원(회의비 및 간담회)

남양주시장배 유소년 축구 I-리그 개최 지원

◇ 축구를 통해 유소년들의 꿈을 그려가는 축제인 장인 I-리그 개최를 통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축구 꿈나무 육성

1 개 요

○ 기 간 : 2023. 4월 ~ 11월 / 8개월간

○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B·C구장 및 유소년 구장

○ 참가인원 : 3개부 25개팀 290명

○ 예 산 액 : 48,310천원 * 시비 19,000천원, 기금 29,310천원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남양주시 / 남양주시체육회, 남양주시축구협회

2 운영계획

○ 지역리그(6회), 여름축구축제, 지도자강습회 등 운영

○ 우리시 유소년선수들에게 대회참가 기회제공

○ 전국 I-리그 여름축제 참가를 통한 전국 타 클럽과 실력교류를 통한 실력향상

3 예산계획

· 단체보조금 : 19,000천원(심판 및 기록원 수당, 운영비 등)

남양주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

◇ 전국 규모의 리틀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야구 꿈나무 조기 발굴 및 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저변 확대

1 개 요

○ 기 간 : 2023. 7월 중
○ 장 소 : 관내 리틀야구장
○ 대회규모 : 55개 팀, 1,100여명
○ 예 산 액 : 5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2 운영계획

○ 경기방식 : 토너먼트(예선, 결선)
○ 참가자격 : 한국리틀야구연맹 소속 야구단(선수등록에 기재 된 자에 한함)
○ 경기규칙

선수 제한	회	출전인원	경기 수	경기시간	콜드게임
4학년 이상 중학교 1학년 이하	6회 말	25명 (단장, 감독, 코치, 선수포함)	54회	1시간 50분	4, 5회 8점 이상 시 (준준결승까지 적용)

3 예산계획

・단체보조금 : 50,000천원(심판비, 감독관비, 개막식 등)

남양주시장기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개최 지원

◇ 사회인 야구 선수들 간 교류를 통한 화합과 축제의장을 마련 사회인 야구 위상 제고

1 개 요

○ 기 간 : 2023. 9월 중
○ 장 소 : 관내 야구장
○ 대회규모 : 30여개 팀 650명
○ 예 산 액 : 26,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2 운영계획

○ 경기방식 : 토너먼트(예선, 결선)
○ 참가자격 : 전국 야구 동호인 클럽
○ 경기규칙

출전선수	회	경기운영	경기시간
20명	7회 말	4심제(결승)	1시간 50분
		2심제(예선, 본선)	

3 예산계획

· 단체보조금 : 26,000천원(심판비, 감독관비, 개막식 등)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1 개 요

○ 기 간 : 2023. 11월 중
○ 장 소 : 화도체육문화센터
○ 대회규모 : 700여개 팀 1,400여명
○ 예 산 액 : 2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 배드민턴협회

2 운영계획

○ 전국 최고의 배드민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사전준비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
○ 체육회 및 협회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대회준비
○ 참가대상 : 초・중・고 학생부, 성인부(남・여)
○ 경기종목 : 4개 종목(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학생부

3 예산계획

・단체보조금 : 20,000천원(심판비, 감독관비, 개막식, 대관료 등)

생활체육 종목활성화 지원

◇ 생활체육 종목활성화(대회개최 및 참가)를 통한 우리시 종목단체 활성화 및 동호인들에게 대회참여 기회제공을 하고자 함.

1 개 요

○ 기 간 : 2023. 3월 ~ 11월 / 9개월간
○ 장 소 : 관내 종목별 구장
○ 대 상 : 45개 종목단체
○ 예 산 액 : 158,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종목단체

2 운영계획

○ 종목별 중요 대회 선정하여 집중 지원을 통한 체육 성과 증진 추진
○ 여성 체육동호인이 많은 종목 위주 여성스포츠대회 개최 추진

3 예산계획

- 공공운영비 : 1,30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 6,920천원(여성스포츠대회 개막식)
- 여 비 : 480천원(현지격려 여비)
- 업무추진비 : 800천원(종목별 간담회)
- 단체보조금 : 148,500천원(종목별 지원금)

제17회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 우리시 대표 체육대회인 시장기 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동호인과 서로 화합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증진에 기여

1 개 요

○ 기 간 : 2023. 4월 ~ 11월 / 8개월간

○ 장 소 : 관내 체육시설

○ 대회규모 : 45개 종목단체 13,000여명

○ 예 산 액 : 155,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종목단체

2 운영계획

○ 45개 전 종목단체 개최 추진

○ 통합개막식 개최를 통한 종목별 단체의식 고취 및 종목별 개회식 간소화

○ 대회규모 및 특성(참가인원, 자부담률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3 예산계획

- 단체보조금 : 129,000천원(45개 종목단체)
- 행사운영비 : 22,000천원(통합개막식, 종목별 트로피 및 상장 등)
- 보 험 료 : 4,000천원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육성지원

◇ 연중 정기적인 종목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호인들의 실력향상 및 클럽 간 화합으로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1 개 요

○ 기 간 : 2023. 3월 ~ 11월 / 9개월간

○ 장 소 : 관내 종목별 구장

○ 대회규모 : 8개 종목 5,500여명

개 최 종 목(8개)
축구, 탁구, 족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 예 산 액 : 6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종목단체

2 운영계획

○ 개최 종목별 최소 3회 이상 리그전 운영 추진

○ 대회규모 및 특성(참가인원, 자부담 금액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3 예산계획

- 공공운영비 : 1,75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 9,900천원(현수막, 대관료 등)
- 업무추진비 : 350천원(종목별 간담회)
- 단체보조금 : 46,000천원(종목별 지원금)

제5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 의장기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시 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동호인의 대회 출전의 기회를 제공 및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1 개 요

○ 기 간 : 2023. 6월 ~ 9월 / 4개월간

○ 장 소 : 관내 종목별 구장

○ 대회규모 : 13개 종목 7,000여명

개 최 종 목(13개)
축구, 탁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산악, 게이트볼, 태권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합기도

○ 예 산 액 : 6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종목단체

2 운영계획

○ 동호인들의 대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종목 간 화합과 소통 도모

○ 대회규모 및 특성(참가인원, 자부담 금액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3 예산계획

- 공공운영비 : 2,450천원(보험료)
- 행사운영비 : 11,200천원(트로피, 메달, 대관료 등)
- 업무추진비 : 350천원(종목별 간담회)
- 단체보조금 : 46,000천원(종목별 지원금)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 우리나라 고유 전통 무예인 태권도 시범단 지원으로 태권도 엘리트 선수 발굴 및 태권도 활성화 기틀 마련

1 개 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연간

○ 장 소 :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강당

○ 대 상 : 남양주시태권도협회 시범단

○ 예 산 액 : 80,00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 남양주시태권도협회

2 운영계획

○ 태권도 시범단 훈련 운영비 및 훈련 용품 지원

○ 공개 오디션을 통한 단원 선정으로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관내 행사 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통한 사회환원

3 예산계획

• 단체보조금 : 80,000천원(대회참가경비, 용품비, 대관료 등)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 우리시 대표로 참가하여 31개 시·군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 및 동호인 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1 개 요

○ 기 간 : 2023. 9. 15.(금) ~ 9. 17.(일) / 3일간

○ 장 소 : 고양시 일원

○ 대회규모 : 31개 시·군 18,000여명 / 24개 종목

○ 참가인원 : 18개종목 497명(임원64명, 선수433명) * 2022년 기준

○ 예 산 액 : 94,094천원

○ 주최/주관 : 경기도체육회 / 고양시, 고양시체육회

2 운영계획

○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원

○ 현지격려를 통한 선수들의 사기진작 도모

3 예산계획

- 일반운영비 : 24,690천원(단체복, 입장식행사, 유류비)
- 업무추진비 : 5,110천원(선수 격려만찬, 현지격려 지원)
- 일반보상금 : 4,400천원(종목단체 격려금)
- 단체보조금 : 57,300천원(종목단체 현지경비, 용품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 우리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실 개발 및 비 인기종목 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1 개 요

○ 기 간 : 2023. 4월 ~ 11월 / 8개월간
○ 장 소 : 남양주시 일원
○ 대 상 : 남양주시민 누구나
○ 운영교실 : 광장운영교실(10개소), 생활체육교실(5개소)
○ 예 산 액 : 65,780천원
○ 주최/주관 : 남양주시체육회

2 운영계획

○ 우리시 광장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실 운영
○ 계절스포츠 교실운영을 통한 다양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 비 인기종목 교실운영을 통한 종목 활성화

3 예산계획

- 인 건 비 : 37,280천원(광장체조교실,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 일반운영비 : 27,810천원(생활체육교실 시설사용료, 생활체육교실 보험료)
- 업무추진비 : 690천원(강사 간담회)

월별 주요일정

월별	사 업 명	기간	장소
1월	정기이사회	1월 31일	다산 정약용도서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1월 ~ 12월	관내 체육시설
	G-스포츠클럽 운영	1월 ~ 12월	관내 체육시설
2월	정기총회	2월 15일	미정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월 17일 ~ 20일	서울, 울산, 강원도
	체육회장 이·취임식	2월 중	남양주시실내체육관
3월	도 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참가	3월 ~ 11월	경기도 일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월 ~ 11월	전국 일원
	생활체육 종목 공모사업	3월 ~ 11월	남양주시 일원
	남양주시 태권도시범단 지원	3월 ~ 11월	청소년수련관
	제12회 남양주시장배 동호인 클럽리그대회	3월 ~ 11월	관내 체육시설
4월	제17회 시장기체육대회 개막식 및 대회 개최	4월 ~ 11월	관내 체육시설
	남양주시장배 유소년 축구 I리그 개최	4월 ~ 11월	관내 축구장
	생활체육교실	4월 ~ 11월	관내 체육시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4월 ~ 12월	관내 초등학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4월 ~ 12월	관내 학교 및 체육시설
	꿈나무스포츠학교 운영	4월 ~ 12월	관내 체육시설
5월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11일 ~ 13일	성남시 일원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27일 ~ 30일	울산광역시 일원
6월	제5회 의장기체육대회 개최 지원	6월 ~ 9월	관내 체육시설
7월	남양주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	7월 중	관내 리틀야구장
8월	-	-	-
9월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9월 15일 ~ 17일	고양시 일원
	남양주시장기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개최 지원	9월 중	관내 야구장
	한강걷기 대회	9월 중	미정
10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10월 13일 ~ 19일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
	제29회 남양주시민의 날 체육대회	10월 중	남양주시종합운동장
11월	제7회 여성스포츠대회	11월 중	관내 체육시설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11월 중	화도체육문화센터
12월	체육인의 밤	12월 중	미정

2023년
수입·지출예산(안)

남양주시체육회
Namyangju City Sports Council

예 산 총 칙(안)

제1조 2023년도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3,847,359천원이다. (2023.01.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고
합 계	3,847,359	3,652,195	195,164
보 조 금 사 업	3,414,827	3,159,907	254,920
일반보조금(시비+기금)	2,574,993	2,551,927	23,066
국비보조금	12,000	12,000	0
국도시비보조금	429,632	444,278	△14,646
도시비보조금	16,702	16,702	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13,500	0	113,500
시교육청비보조금	268,000	0	268,000
교육청비보조금	0	135,000	△135,000
자 체 사 업	313,701	367,021	△53,320
이사회비, 회원단체	260,257	313,692	△53,435
기타수입	53,444	53,329	115
기 부 금 사 업	68,729	75,267	△6,538
기부금사업	68,729	75,267	△6,538
출 연 금	50,102	50,000	102
출연금	50,102	50,000	102

제2조 수입지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수입지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없음,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제5조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조례, 규약,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6조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예산성립 후 남양주시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보조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기타 총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준용한다.

수 입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장 관 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3,847,359	3,652,195	195,164
보조금수입	3,414,827	3,159,907	254,920
일반보조금(시비+기금)	2,574,993	2,551,927	23,066
시비보조금	2,500,593	2,428,227	72,366
○ 생활체육단체 육성	956,059	992,647	△36,588
○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158,000	158,000	0
○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55,000	155,000	0
○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94,094	85,500	8,594
○ 남양주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	50,000	50,000	0
○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0	10,000	△10,000
○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65,780	65,780	0
○ 남양주시 태권도 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80,000	80,000	0
○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50,000	50,000	0
○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60,000	60,000	0
○ 생활체육 종목 공모사업	0	120,000	△120,000
○ 남양주 시장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	26,000	26,000	0
○ 남양주시장배 유소년 축구 I-리그 개최 지원	19,000	19,000	0
○ 남양주 시장기 전국배드민턴 대회 개최	20,000	20,000	0
○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11,630	12,800	△1,170
○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295,730	300,000	△4,270
○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선수육성지원	293,600	0	293,600
○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5,700	5,700	0
○ 남양주 한강 걷기대회 개최 지원	50,000	0	50,000
○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110,000	0	110,000
○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0	135,000	△135,000
○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	0	82,800	△82,800

수 입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장 관 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체육진흥기금	74,400	123,700	△49,300
○ 생활체육운영 지도자 육성	31,200	33,600	△2,400
○ 경기도체육대회 입상지원	35,800	35,800	0
○ 엘리트대회 입상지원(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7,400	5,000	2,400
○ 더불어 다이어트 챌린지	0	22,300	△22,300
○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0	27,000	△27,000
국비보조금	12,000	12,000	0
국비보조금	12,000	12,000	0
○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2,000	12,000	0
국도시비보조금	429,632	444,278	△14,646
국도시비보조금	429,632	444,278	△14,646
○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214,816	222,379	△7,563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214,816	221,899	△7,083
도시비보조금	16,702	16,702	0
도시비보조금	16,702	16,702	0
○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16,702	16,702	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13,500	0	113,500
도시교육청비보조금	113,500	0	113,500
○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113,500	0	113,500
시교육청비보조금	268,000	0	268,000
시교육청비보조금	268,000	0	268,000
○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268,000	0	268,000
교육청비보조금	0	135,000	△135,000
교육청비보조금	0	135,000	△135,000
○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교육청매칭사업비)	0	135,000	△135,000
자체 수입	313,701	367,021	△53,320
이사회비,회원단체	260,257	313,692	△53,435
이사회비	235,126	290,442	△55,316
○ 이사회비	75,298	118,298	△43,000
○ 적립금(예금) 및 이자	23,665	23,505	160

수 입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장 관 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예탁금(증권계좌)	100,000	100,000	0
○ 순세계잉여금	36,123	48,599	△12,476
○ 공공예금 이자수입	40	40	0
회원단체회비	**25,131**	**23,250**	**1,881**
○ 회원단체 회비	19,440	18,360	1,080
○ 순세계잉여금	5,683	4,873	810
○ 공공예금 이자수입	8	17	△9
기타수입	**53,444**	**53,329**	**115**
체육꿈나무 육성기금	**53,444**	**53,329**	**115**
○ 순세계잉여금	53,374	53,304	70
○ 공공예금 이자수입	70	25	45
기부금 수입	**68,729**	**75,267**	**△6,538**
기부금 사업	**68,729**	**75,267**	**△6,538**
기부금 운영	**68,729**	**75,267**	**△6,538**
○ 순세계잉여금	68,657	75,195	△6,538
○ 공공예금 이자수입	72	72	0
출연금	**50,102**	**50,000**	**102**
출연금	**50,102**	**50,000**	**102**
○ 순세계잉여금	50,051	50,000	**51**
○ 공공예금 이자수입	51	0	**51**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남양주시체육회		**3,847,359**	**3,652,195**	**195,164**
보조금 사업		3,414,827	3,159,907	254,920
일반보조금 사업		2,500,593	2,428,227	72,366
생활체육단체 육성		**956,059**	**992,647**	**△36,588**
101 인건비		763,066	780,573	△17,507
01 보수		763,066	780,573	△17,507
○ 기본급		**482,155**	465,226	16,929
○ 명절휴가비		24,107	23,262	845
· 명절휴가비	(482,155,000원/12월)*30%*2회	24,107	23,262	845
○ 수당 등		119,601	154,564	△34,963
· 가족수당		6,480	6,480	0
- 배우자	40,000원*7명*12월	3,360	3,360	0
- 기타가족	20,000원*13명*12월	3,120	3,120	0
· 정액급식비	140,000원*27명*12월	45,360	47,040	△1,680
· 초과근무수당(직원, 지도자)	4,370,833원(25명)*12월	52,450	86,242	△33,792
· 연가보상비(직원, 지도자)	81,010원*27명*7일	15,311	14,802	509
○ 퇴직적립금	666,603,000원*1/12월	55,550	58,588	△3,038
○ 4대보험 부담금		81,653	78,933	2,720
· 국민연금	666,603,000원*4.5%	29,997	32,762	△2,765
· 국민건강보험	666,603,000원*3.545%	23,631	25,445	△1,814
· 장기요양보험	23,631,000원*12.81%	3,027	3,097	△70
· 고용보험	666,603,000원*1.75%	11,666	8,373	3,293
· 산재보험	666,603,000원*2%	13,332	9,256	4,076
201 일반운영비		122,893	130,654	△7,761
01 사무관리비		70,119	76,156	△6,037
○ 사무용품비(문구류,복사지등)	30,000원*14명*12월	5,040	5,040	0
○ 복사기 및 파쇄기 렌탈료	900,000원*12월	1,080	9,000	△7,920
○ 홈페이지 유지관리	1,000,000원*1회	1,000	1,000	0
○ 신문구독료	72,000원*12월	864	864	0
○ 인쇄물 · 봉투제작		2,006	2,000	6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대봉투	400원*1,000매	400	400	0
· 우편봉투	200원*1,030매	206	200	6
· 명함 · 규정집 등	1,400,000원*1회	1,400	1,400	0
○ 급량비	8,000원*14명*6식*12월	8,064	8,064	0
○ 상장 케이스 및 내지	6,500원*600개	3,900	6,500	△2,600
○ 보존문서 파기 비용	165,000원*1회	165	165	0
○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1,200,000원*1회	1,200	1,100	100
○ 사무기기 유지관리비(수선비)	2,600,000원*1식	2,600	2,600	0
○ 지문인식기·프로그램 사용료	70,000원*12월	840	840	0
○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3명*3회	630	630	0
○ 회계관리 수수료	3,000,000원*3식	9,000	3,000	6,000
○ 위탁교육(법정의무교육)	500,000원*4회	2,000	0	2,000
○ 사무실 임차료	25,377,000원*1회	25,377	25,000	377
○ 사무실 이전비용		0	4,000	△4,000
· 사무실 집기류 임차비용	2,700,000*1개월	0	2,700	△2,700
· 이사업체 비용	1,300,000*1회	0	1,300	△1,300
○ 환경관리 용품		6,353	6,353	0
· 화장지	25,000원*4BOX*12월	1,200	1,200	0
· 종이컵	11,000원*3팀*2BOX*12월	792	792	0
· 공기청정기 임대료	37,800원*3대*12월	1,361	1,361	0
· 기타 소모품	3,000,000원*1식	3,000	3,000	0
02 공공운영비		25,774	26,498	△724
○ 공공요금 및 제세		19,126	19,126	0
· 전기요금	700,000원*12월	8,400	8,400	0
· 통신요금(전화 및 인터넷)	400,000원*12월	4,800	4,800	0
· 우편요금	2,340원*70통*12월	1,966	1,966	0
· 자동차세	100,000원*3대*2회	600	600	0
· 환경개선부담금	60,000원*3대*2회	360	360	0
· 차량보험료	1,000,000원*3대	3,000	3,000	0
· 신원보증보험료	100,000원*4명	0	400	△4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차량선박비		6,648	6,972	△324
· 차량유류비	1,800원*3대*60리터*12월	3,888	4,212	△324
· 차량유지관리비(엔진오일, 소모품교체 등)	2,760,000원*1식	2,760	2,760	0
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7,000	28,000	△1,000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000,000원*27명*1회	27,000	28,000	△1,000
202 여비		11,760	16,800	△5,040
01 국내여비		11,760	16,800	△5,040
· 국내여비	70,000원*14명*12월	11,760	16,800	△5,040
203 업무추진비		11,120	12,120	△1,000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	2,320	0
○ 직원사기진작 업무추진	80,000원*29명	2,320	2,32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5,000	△1,000
○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추진	4,000,000원*1회	4,000	5,000	△1,0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0	4,800	0
○ 사무국	400,000원*12월	4,800	4,800	0
204 직무수행경비		47,220	48,000	△780
02 직급보조비		47,220	48,000	△780
○ 4급	400,000원*1명*12월	4,800	4,800	0
○ 5급	250,000원*1명*12월	3,000	3,000	0
○ 6급	175,000원*2명*12월	4,200	6,300	△2,100
○ 7급	165,000원*3명*12월	5,940	5,940	0
○ 8급	155,000원*1명*12월	1,860	3,720	△1,860
○ 9급	155,000원*6명*12월	11,160	5,580	5,580
○ 9급(기사)	155,000원*1명*12월	1,860	1,860	0
○ 지도자(14명)	100,000원*12명*12월	14,400	16,800	△2,4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	3,100	△3,100
01 시설비		0	3,100	△3,100
○ 사무실이전비		0	3,100	△3,100
· 전기 공사비	3,100,000*1회	0	3,100	△3,100
405 자산취득비		0	1,400	△1,4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1,400	△1,400
○ 사무기기(파티션 등)	1,400,000원*1회	0	1,400	△1,400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158,000**	**158,000**	**0**
201 일반운영비		8,220	8,220	0
02 공공운영비		1,300	1,300	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1,300,000원*1회	1,300	1,300	0
03 행사운영비		6,920	6,920	0
○ 여성활성화대회 개막식		6,920	6,920	0
· 현수막	100,000원*7식	700	700	0
· 식전공연(사회자 등)	500,000원*1회	500	500	0
· 대관료	300,000*7개 종목	2,100	2,100	0
· 트로피	90,000*4개*7개 종목	2,520	2,520	0
· 대회운영 지원(의자 렌탈 등)	1,100,000원*1회	1,100	1,100	0
202 여비		480	480	0
01 국내여비		480	480	0
○ 국내여비	20,000원*4명*2일	160	160	0
○ 숙박료	40,000원*4명	160	160	0
○ 식 비	20,000원*4명*2일	160	160	0
203 업무추진비		800	8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	800	0
○ 참가자 격려	20,000원*40개 대회	800	800	0
307 민간이전		148,500	148,500	0
04 단체보조금		148,500	148,500	0
○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1,925,000*40종목	77,000	77,000	0
○ 경기도지사기 참가지원	2,500,000*20종목	50,000	50,000	0
○ 관내대회 개최지원		4,000	4,000	0
· 종목별 대회개최	4,000,000*1종목	4,000	4,000	0
○ 여성스포츠대회	2,500,000원*7종목	17,500	17,500	0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55,000**	**155,000**	**0**
201 일반운영비		24,800	24,800	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4,000	4,000	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500,000원*8개월	4,000	4,000	0
03 행사운영비		20,800	20,800	0
○ 상장제작	330원*3,500장	1,155	1,155	0
○ 트로피, 메달 제작	80,000원*4개*37종목	11,840	11,840	0
○ 대회 홍보비(개막식 및 종목 현수막 등)	1,000,000원*1회	1,000	1,000	0
○ 대회준비 및 행사용품 구입	1,105,000원*1회	1,105	1,105	0
○ 청소용역비	700,000원*1회	700	700	0
○ 개막식 행사	5,000,000원*1회	5,000	5,000	0
203 업무추진비		1,200	1,2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	1,200	0
○ 대회 지원요원 급양비	500,000원*1회	500	500	0
○ 종목단체 간담회	7,000원*10명*10회	700	700	0
307 민간이전		129,000	129,000	0
04 단체보조금		129,000	129,000	0
○ 종목별 지원	3,000,000원*43종목	129,000	129,000	0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94,094**	**85,500**	**8,594**
201 일반운영비		23,284	19,183	4,101
01 사무관리비		16,855	16,575	280
○ 피 복 비		16,855	16,575	280
· 단체복	85,000원*195벌	16,575	16,575	0
○ 심사위원 수당	70,000원*4명*1회	280	0	280
02 공공운영비		507	0	507
○ 차량선박비		507	0	507
· 차량유류비	1,800원*3대*80리터	432	0	432
· 차량유지관리비	25,000원*3대	75	0	75
03 행사운영비		5,922	2,608	3,314
○ 입장식(이벤트, 현수막 등) 및 행사운영 지원	1,722,000원*1회	1,722	0	1,722
○ 선수 보험료	2,000원*500명	1,000	748	252
○ 종목별 필승 현수막	60,000원*20개 종목	1,200	660	54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사전답사(만찬장)	100,000원*1회	100	0	100
○ 차량 렌탈비	125,000원*4일*1대	500	0	500
○ 차량 렌탈비(입장부 버스임차)	700,000원 * 1일 * 2대	1,400	1,200	200
202 여비		4,000	6,000	△2,000
01 국내여비		4,000	6,000	△2,000
○ 국내여비	20,000원*5일*10명	1,000	1,500	△500
○ 숙박료	50,000원*4일*10명	2,000	3,000	△1,000
○ 식 비	20,000원*5일*10명	1,000	1,500	△500
203 업무추진비		5,110	5,000	11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10	5,000	110
○ 선수 격려만찬	30,000원*150명	4,500	4,500	0
○ 대회참가선수 현지 격려(음료 등)	24,400원*25개 종목	610	500	110
301 일반보상금		4,400	3,800	600
09 행사실비보상금		4,400	3,800	600
○ 현지격려금		4,000	3,400	600
· 20개 종목	200,000원*20개 종목	4,000	3,400	600
○ 입장부 격려금	200,000원*2개 단체	400	400	0
307 민간이전		57,300	51,517	5,783
04 단체보조금		57,300	51,517	5,783
○ 교통비		5,800	6,370	△570
· 1일	10,000원*1일*278명	2,780	1,790	990
· 2일	10,000원*2일*151명	3,020	3,020	0
· 3일	10,000원*3일*52명	0	1,560	△1,560
○ 숙박비		7,440	7,440	0
· 1박	80,000원*1박*61실	4,880	4,880	0
· 2박	80,000원*2박*16실	2,560	2,560	0
○ 급량비		15,960	15,057	903
· 1일	8,000원*3식*1일*227명	5,448	2,436	3,012
· 2일	8,000원*3식*2일*219명	10,512	8,274	2,238
· 3일	7,000원*3식*3일*69명	0	4,347	△4,347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용품비	60,000원*435명	26,100	22,650	3,450
○ 운영비	100,000원*20개종목	2,000	0	2,000
남양주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		**50,000**	**50,000**	**0**
307 민간이전		50,000	50,000	0
04 단체보조금		50,000	50,000	0
○ 열수 정악용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지원	50,000,000원*1회	50,000	50,000	0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0**	**10,000**	**△10,000**
203 업무추진비		0	110	△11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110	△110
○ 격려운영비	110,000원*1회	0	110	△110
307 민간이전		0	9,890	△9,890
04 단체보조금		0	9,890	△9,890
○ 교통비	10,000원*120명	0	1,200	△1,200
○ 급량비		0	2,450	△2,450
· 1일	7,000원*3식*100명	0	2,100	△2,100
· 2일	7,000원*5식*10명	0	350	△350
○ 유니폼	52,000원*120명	0	6,240	△6,240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65,780**	**65,780**	**0**
101 인건비		32,480	32,480	0
01 보수		32,480	32,480	0
○ 광장체조교실 강사비		32,480	32,480	0
· 와부읍, 호평동(주5회*28주)	40,000원*2명*140회	11,200	11,200	0
· 진건, 진접, 별내, 다산, 오남(주3회*28주)	40,000원*5명*84회	16,800	16,800	0
· 왕숙, 이석영광장(주2회*28주)	40,000원*2명*56회	4,480	4,480	0
○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강사비		0	0	0
· 자전거교실(주5회)		0	0	0
· 여성스케이트교실(주2회)		0	0	0
· 게이트볼순회교실(주2회)		0	0	0
· 패밀리볼링교실(주1회)		0	0	0
· 청소년 스크린골프교실(주1회)		0	0	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31,930	31,930	0
01 사무관리비		1,050	1,050	0
○ 앰프수리비	55,000원*8회	440	440	0
○ 용품구입비(마이크 등)	610,000원*1식	610	610	0
03 행사운영비		30,880	30,880	0
○ 현수막(교실, 홍보)	60,000원*120식	7,200	7,200	0
○ 여성스케이트교실(시설사용료)		0	0	0
○ 패밀리볼링교실(시설사용료)	260,000원*10회*2개소	5,200	5,200	9,600
○ 청소년수상스키교실(시설사용료)	600,000원*6회*1개소	3,600	3,600	0
○ 실내서핑교실(시설사용료)	1,600,000원*6회*1개소	9,600	9,600	0
○ 청소년 스크린골프교실(시설사용료)	440,000원*12회*1개소	5,280	5,280	0
203 업무추진비		720	72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	720	0
○ 교실운영 강사 간담회	40,000원*18회	720	720	0
405 자산취득비		650	650	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650	650	0
○ 엠프구입비	650,000*1개	650	650	0
남양주시 태권도 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80,000**	**80,000**	**0**
307 민간이전		80,000	80,000	0
04 단체보조금		80,000	80,000	0
○ 남양주시태권도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	75,000,000원*1회	75,000	75,000	0
○ 태권도 시범단 대회 참가 경비	2,500,000원*2회	5,000	5,000	0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육성 지원		**50,000**	**50,000**	**0**
201 일반운영비		11,650	11,650	0
02 공공운영비		1,750	1,750	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250,000원*7개월	1,750	1,750	0
03 행사운영비		9,900	9,900	0
○ 현수막 제작	100,000원 *9식	900	900	0
○ 대관 임차료	1,125,000원*8종목	9,000	9,000	0
203 업무추진비		350	350	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	350	0
○ 종목단체 간담회	7,000원*10명*5회	350	350	0
307 민간이전		38,000	38,000	0
04 단체보조금		38,000	38,000	0
○ 종목별 보조금 지원(우수종목)	1,250,000원*4종목*4회	20,000	20,000	0
○ 종목별 보조금 지원	900,000원*5종목*4회	18,000	18,000	0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60,000**	**60,000**	**0**
201 일반운영비		13,650	13,650	0
02 공공운영비		2,450	2,450	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2,450,000원*1회	2,450	2,450	0
03 행사운영비		11,200	11,200	0
○ 시상비 제작(우승기, 트로피)	400,000원*13종목	5,200	5,200	0
○ 대관 임차료	6,000,000원*1회	6,000	6,000	0
203 업무추진비		350	35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	350	0
○ 종목단체 간담회	7,000원*10명*5회	350	350	0
307 민간이전		46,000	46,000	0
04 단체보조금		46,000	46,000	0
○ 종목별 보조금 지원(우수종목1)	5,000,000원*2종목	10,000	10,000	0
○ 종목별 보조금 지원(우수종목2)	4,000,000원*3종목	12,000	12,000	0
○ 종목별 보조금 지원	3,000,000원*8종목	24,000	24,000	0
생활체육 종목 공모사업		**0**	**120,000**	**△120,000**
201 일반운영비		0	560	△560
01 사무관리비		0	560	△560
○ 심사위원 수당	70,000원*4명*2회	0	560	△560
203 업무추진비		0	440	△44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440	△440
○ 종목단체 간담회 및 격려	8,000원*5명*11회	0	440	△440
307 민간이전		0	119,000	△119,000
04 단체보조금		0	119,000	△119,0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종목별 단체보조금	119,000,000원*1회	0	119,000	△119,000
남양주시장기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		**26,000**	**26,000**	0
307 민간이전		26,000	26,000	0
04 단체보조금		26,000	26,000	0
○ 열수 정약용 전국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지원	26,000,000원*1회	26,000	26,000	0
남양주시장배 유소년 축구 I-리그 개최 지원		**19,000**	**19,000**	**0**
307 민간이전		19,000	19,000	0
04 단체보조금		19,000	19,000	0
○남양주시장배 유소년 축구 I리그 개최 지원	19,000,000원*1회	19,000	19,000	0
남양주시장기 전국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		**20,000**	**20,000**	**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04 단체보조금		20,000	20,000	0
○남양주 열수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20,000,000원*1회	20,000	20,000	0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		**11,630**	**12,800**	**△1,170**
201 일반운영비		656	610	46
02 공공운영비		496	460	36
○ 차량선박비		496	460	36
· 차량유류비	1,800원*2대*110리터	396	360	36
· 차량유지관리비	50,000원*2대	100	100	0
03 행사운영비		160	150	10
○ 행사운영 지원(현수막 등)	150,000원*1회	160	150	10
202 여비		1,200	1,200	0
01 국내여비		1,200	1,200	0
○ 일 비	20,000원*3일*6명	360	360	0
○ 숙박료	40,000원*2일*6명	480	480	0
○ 식 비	20,000원*3일*6명	360	360	0
203 업무추진비		1,774	1,840	△66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74	1,840	△66
○ 참가선수 등 관계자 간담회	20,000원*2회*40명	1,600	1,500	100
○ 현지격려(음료구입 등)	174,000원*1회	174	340	△166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8,000	9,150	△1,150
09 행사실비보상금		8,000	9,150	△1,150
○ 현지격려금(선수, 감독, 코치)	200,000원*40명	8,000	8,750	△750
○ 단체격려금	200,000원*2개 종목	0	400	△400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		**295,730**	**300,000**	**△4,270**
201 일반운영비		52,700	52,760	△60
01 사무관리비		42,680	43,440	△760
○ 피 복 비		42,680	43,440	△760
· 단체복(선수용)	80,000원*226벌	18,080	19,390	△1,310
· 단체복(임원용)	85,000원*220벌	18,700	19,200	△500
· 단체복(입장부)	80,000원*55벌	4,400	3,850	550
· 모 자(입장부+임원)	15,000원*100개	1,500	1,000	500
02 공공운영비		632	632	0
○ 차량선박비		632	632	0
· 차량유지관리비	100,000원*2대	200	200	0
· 차량유류비	1,800원*2대*120리터	432	432	0
03 행사운영비		9,388	8,688	700
○ 입장식 운영비(이벤트, 현수막 등)	2,800,000원*1회	2,800	3,000	△200
○ 선수 등록비	50,000원*3명	150	0	150
○ 대회 출전종목 시설사용료(볼링)	140,000원*1종목	140	140	0
○ 마커비용(골프)	70,000원*2개부	140	140	0
○ 현수막	80,000원*26개	2,080	1,300	780
○ 선수 상해보험	10,000원*226명	2,260	2,493	△233
○ 행사운영 지원(우편발송 및 택배비용)	1,618,000원*1회	1,618	1,415	203
○ 사전답사(만찬장, 숙소)	200,000원*1회	200	200	0
202 여비		5,760	5,120	640
01 국내여비		5,760	5,120	640
○ 일 비	20,000원*4일*16명	1,280	1,280	0
○ 숙박료	50,000원*4일*16명	3,200	2,560	640
○ 식 비	20,000원*4일*16명	1,280	1,280	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3 업무추진비		6,880	7,120	△24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80	7,120	△240
○ 참가선수 격려(만찬)	20,000원*200명	4,000	4,000	0
○ 대회 참가선수 훈련 격려	100,000원*24개 종목	2,400	2,400	0
○ 대회참가선수 현지 격려(음료 등)	20,000원*24개 종목	480	720	△240
301 일반보상금		74,740	70,300	4,440
09 행사실비보상금		74,740	70,300	4,440
○ 현지격려금	300,000원*24개 종목	7,200	7,200	0
○ 입장부격려금	300,000원*1개 종목	300	300	0
○ 종목별 감독수당	500,000원*26개 종목	13,000	13,000	0
○ 참가선수 훈련수당(교통비 등)	150,000원*226명	33,900	37,350	△3,450
○ 참가선수 출전수당	90,000원*226명	20,340	12,450	7,890
307 민간이전		155,650	164,700	△9,050
04 단체보조금		155,650	164,700	△9,050
○ 출전 종목 강화훈련 및 용품구입	4,000,000원*24개 종목	96,000	108,000	△12,000
○ 숙박비	50,000원*185실	9,250	12,300	△3,050
○ 종목별 운영비	500,000원*24개 종목	12,000	12,000	0
○ 현지경비(식비 등)	1,600,000원*24개 종목	38,400	32,400	6,000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		**293,600**	**0**	**293,600**
301 일반보상금		293,600	0	293,600
10 운동선수보상금		293,600	0	293,600
○ 우수선수 지원금		293,600	0	293,600
· A등급	1,000,000원*11명*4개월	44,000	0	44,000
· B등급	800,000원*29명*4개월	92,800	0	92,800
· C등급	600,000원*48명*4개월	115,200	0	115,200
· D등급	400,000원*26명*4개월	41,600	0	41,600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5,700**	**5,700**	**0**
201 일반운영비		320	340	△20
02 공공운영비		248	230	18
○ 차량선박비		248	230	18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차량유지관리비	50,000원*1대	50	50	0
· 차량유류비	1,800원*1대*110리터	198	180	18
03 행사운영비		72	110	△38
○ 행사운영 지원(다과류)	72,000원*1회	72	110	△38
202 여비		780	960	△180
01 국내여비		780	960	△180
○ 국내여비	20,000원*2일*6명	240	320	△80
○ 숙박료	50,000원*1일*6명	300	320	△20
○ 식 비	20,000원*2일*6명	240	320	△80
203 업무추진비		600	1,000	△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	1,000	△400
○ 소년체전 참가자 간담회	20,000원*30명	600	1,000	△400
301 일반보상금		4,000	3,400	600
09 행사실비보상금		4,000	3,400	600
○ 선수격려금	200,000원*20명	4,000	1,600	2,400
○ 지도자격려금	200,000원*9명	0	1,800	△1,800
남양주 한강 걷기대회 개최 지원		**50,000**	**0**	**50,000**
201 일반운영비		50,000	0	50,000
01 사무관리비		6,740	0	6,740
○ 급량비	8,000원*2회*190명	3,040	0	3,040
○ 단체복(진행요원 등)	20,000원*110개	2,200	0	2,200
○ 홈페이지	1,500,000원*1회	1,500	0	1,500
02 공공운영비		940	0	940
○ 보험비	940,000원*1회	940	0	940
03 행사운영비		36,060	0	36,060
○ 무대제작	4,500,000원*1회	4,500	0	4,500
○ 렌탈비(천막, 의자, 테이블 등)	4,465,000원*1회	4,465	0	4,465
○ 메달제작	10,000원*1,000게	10,000	0	10,000
○ 완보증 제작	550원*1,500개	825	0	825
○ 배번표 제작	800원*2,000개	1,600	0	1,6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공연비(식전, 개막, 상시)	7,600,000원*1회	7,600	0	7,600
○ 에어아치(출발선), 포토존	1,800,000원*1회	1,800	0	1,800
○ 현수막(홍보, 부스 등)	5,300,000원*1회	5,300	0	5,300
○ 체험부스(캘리그라피, 키다리 등)	2,260,000원*1회	2,260	0	2,260
○ 포스터 제작	1,550,000원*1회	1,550	0	1,550
○ 임차료(버스배차)	660,000원*1회	660	0	660
○ 행사운영비(반환도장, 문구류 등)	1,760,000원*1회	1,760	0	1,760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110,000**	**0**	**110,000**
201 일반운영비		67,200	0	67,200
01 사무관리비		28,000	0	28,000
○ 단체복(진행요원 등)	80,000원*350개	28,000	0	28,000
02 공공운영비		5,000	0	5,00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5,000,000원*1회	5,000	0	5,000
03 행사운영비		34,200	0	34,200
○ 대회 현수막(홍보 및 대회장 등)	5,000,000원*1회	5,000	0	5,000
○ 트로피, 메달 제작	100,000원*4개*11종목	4,400	0	4,400
○ 대회용품 구입(기수단 티 등)	4,000,000원*1회	4,000	0	4,000
○ 시민참여경기 진행	7,000,000원*1회	7,000	0	7,000
○ 천막 및 테이블 렌탈	4,800,000원*1회	4,800	0	4,800
○ 청소용역비	1,000,000원*1회	1,000	0	1,000
○ 의료진(개막식 및 사전경기)	500,000원*10회	5,000	0	5,000
○ 대회 요강, 리플릿, 초대장 제작	3,000,000원*1회	3,000	0	3,000
203 업무추진비		2,800	0	2,8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0	2,000
○ 개회 운영 회의비	8,000원*50명*5식	2,000	0	2,000
○ 종목단체 간담회	8,000원*10명*10식	800	0	800
301 일반보상금		16,000	0	16,000
09 행사실비보상금		16,000	0	16,000
○ 시상품	7,000원*1,000개	7,000	0	7,000
○ 시상금	9,000,000원*1회(경기종목,시민참여경기 등)	9,000	0	9,0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7 민간이전		24,000	0	24,000
04 단체보조금		24,000	0	24,000
○ 종목별 지원	3,000,000원*8종목	24,000	0	24,000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교육청비 매칭사업(135,000천원)**	**0**	**135,000**	**△135,000**
101 인건비		0	72,000	△72,000
01 보수		0	72,000	△72,000
○ 강사수당(육상, 수영, 배드민턴 1)	80,000원*300*3명	0	72,000	△72,000
201 일반운영비		0	58,500	△58,500
01 사무관리비		0	12,500	△12,500
○ 사무용품비(문구류,복사지등)	100,000원*5개 종목	0	500	△500
○ 코로나 방역용품(체온계 등)		0	0	0
○ 대관료		0	12,000	△12,000
· 배드민턴 2	500,000원*12개월	0	6,000	△6,000
· 배드민턴 3	500,000원*12개월	0	6,000	△6,000
· 육상		0	0	0
· 수영		0	0	0
· 테니스		0	0	0
03 행사운영비		0	46,000	△46,000
○ 대회 운영용품 구입		0	22,000	△22,000
· 육상	2,000,000원*1회	0	2,000	△2,000
· 수영	2,000,000원*1회	0	2,000	△2,000
· 테니스		0	0	0
· 배드민턴 1	2,000,000원*1회	0	2,000	△2,000
· 배드민턴 2	8,000,000원*1회	0	8,000	△8,000
· 배드민턴 3	8,000,000원*1회	0	8,000	△8,000
○ 대회출전비(배드민턴 2, 3)	4,000,000원*3회*2개 종목	0	24,000	△24,000
○ 훈련비		0	0	0
○ 보험비		0	0	0
○ 홍보비(현수막, 전단지 등)		0	0	0
203 업무추진비		0	4,500	△4,5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4,500	△4,500
○ 각 종 회의개최(운영위원회 등)	300,000원*1회*5개 종목	0	1,500	△1,500
○ 대회참가선수 현지 격려(식비, 음료 등)	300,000원*2회*5개 종목	0	3,000	△3,000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		**0**	**82,800**	**△82,800**
307 민간이전		0	82,800	△82,800
04 단체보조금		0	82,800	△82,800
○ 도민체전 출전종목 육성(종목단체)	200,000원*21개종목*12월	0	50,400	△50,400
○ 도민체전 출전종목 육성(미가입단체)	100,000원*1개종목*12월	0	1,200	△1,200
○ 일반종목 육성	100,000원*26개종목*12월	0	31,200	△31,200
체육진흥기금 사업		**74,400**	**123,700**	**△49,300**
생활체육운영 지도자 육성		**31,200**	**33,600**	**△2,400**
101 인건비		31,200	33,600	△2,400
01 보수		31,200	33,600	△2,400
○ 활동수당	2,600,000원*12월	31,200	33,600	△2,400
경기도체육대회 입상지원		**35,800**	**35,800**	**0**
301 일반보상금		35,800	35,800	0
09 행사실비보상금		35,800	35,800	0
○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포상(관내)	35,800,000원*1회	35,800	35,800	0
엘리트대회 입상자지원(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7,400**	**5,000**	**2,400**
301 일반보상금		7,400	5,000	2,400
09 행사실비보상금		7,400	5,000	2,400
○엘리트대회 입상자지원	7,400,000원*1회	7,400	5,000	2,400
더불어 다이어트 챌린지		**0**	**22,300**	**△22,300**
101 인건비		0	14,000	△14,000
01 보수		0	14,000	△14,000
○ 강사수당	상반기 100,000원*35회*2명 하반기 100,000원*35회*2명	0	14,000	△14,000
201 일반운영비		0	7,980	△7,980
01 사무관리비		0	840	△840
○ 심사위원 수당	70,000원*3명*2일*2회	0	840	△840
02 공공운영비		0	240	△24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보험가입비용	12,000원*10명*2회	0	240	△240
03 행사운영비		0	6,900	△6,900
○ 현수막 제작	60,000원*5식*2회	0	600	△600
○ 판넬 제작	50,000원*3개*2회	0	300	△300
○ 프로필 촬영비용	200,000원*10명*2회	0	4,000	△4,000
○ 영상 촬영비용	1,000,000원*2회	0	2,000	△2,000
203 업무추진비		0	320	△32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320	△32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00원*2회	0	320	△320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0**	**27,000**	**△27,000**
201 일반운영비		0	8,000	△8,000
02 공공운영비		0	1,000	△1,000
○ 보험가입비용	1,000,000원*1회	0	1,000	△1,000
03 행사운영비		0	7,000	△7,000
○ 대관료	2,000,000원*1회	0	2,000	△2,000
○ 트로피, 메달 제작	1,000,000원*1회	0	1,000	△1,000
○ 렌탈료	4,000,000원*1회	0	4,000	△4,000
307 민간이전		0	19,000	△19,000
04 단체보조금		0	19,000	△19,000
○ 종목별 단체보조금	4,750,000원*4개종목	0	19,000	△19,000
국비보조금 사업		**12,000**	**12,000**	**0**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2,000**	**12,000**	**0**
101 인건비		12,000	12,000	0
01 보수		12,000	12,000	0
○ 사무국장 지원수당	1,000,000원*12월	12,000	12,000	0
국도시비보조금 사업		**429,632**	**444,278**	**△14,646**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국비기금 104,289(48%) 도비 52,145(23%) 시비 65,945(29%)	**214,816**	**222,379**	**△7,563**
101 인건비		213,696	211,208	2,488
01 보수		213,696	211,208	2,488
○ 기본급		179,844	174,888	4,956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생활체육지도자	2,141,000원*7명*12월	179,844	174,888	4,956
○ 퇴직적립금	14,987,000원*1회	14,987	14,574	413
○ 근속수당	310,000원*12월	0	3,720	△3,720
○ 4대보험 부담금		18,865	18,026	839
· 국민연금	179,844,000원*4.5%	8,093	7,870	223
· 국민건강보험	179,844,000원*3.545%	6,376	6,113	263
· 장기요양보험	6,376,000원*12.81%	817	756	61
· 고용보험	174,844,000원*1.15%	2,069	1,941	128
· 산재보험	174,844,000*0.84%	1,510	1,346	164
201 일반운영비		1,120	1,091	29
03 행사운영비		1,120	1,091	29
· 지도활동 보험료	160,000원*7명*12월	1,120	1,091	29
202 여비		0	10,080	△10,080
01 국내여비		0	10,080	△10,080
· 활동여비	120,000원*7명*12월	0	10,080	△10,08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국비기금104,289천원(48%) 도비 52,145천원(23%) 시비 65,465천원(29%)	**214,816**	**221,899**	**△7,083**
101 인건비		213,696	210,728	2,968
01 보수		213,696	210,728	2,968
○ 기본급		179,844	174,888	4,956
· 생활체육지도자	2,141,000원*7명*12월	179,844	174,888	4,956
○ 퇴직적립금	14,984,000원*1회	14,987	14,574	413
○ 근속수당	270,000원*12월	0	3,240	△3,240
○ 시간 외 수당		0	0	0
○ 4대보험 부담금		18,865	18,026	839
· 국민연금	179,844,000원*4.5%	8,093	7,870	223
· 국민건강보험	179,844,000원*3.545%	6,376	6,113	263
· 장기요양보험	6,376,000원*12.81%	817	756	61
· 고용보험	179,844,000원*1.15%	2,069	1,941	128
· 산재보험	179,844,000*0.84%	1,510	1,346	164
201 일반운영비		1,120	1,091	29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행사운영비		1,120	1,091	29
· 지도활동 보험료	160,000원*7명*12월	1,120	1,091	29
202 여비		0	10,080	△10,080
01 국내여비		0	10,080	△10,080
· 활동여비	120,000원*7명*12월	0	10,080	△10,080
도시비보조금 사업		**398,202**	**16,702**	**381,500**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도비50%(8,351천원) 시비50%(8,351천원)**	**16,702**	**16,702**	**0**
101 인건비		16,702	16,702	0
01 보수		16,702	16,702	0
○ 처우개선비		16,702	16,702	0
· 명절수당	500,000원*2회*14명	14,000	14,000	0
· 법정부담금	1,351,000원*2회	2,702	2,702	0
도시교육청비 보조금 사업		**113,500**	**0**	**113,500**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도비25%(28,375천원) 시비25%(28,375천원) 교육청50%(56,750천원)**	**113,500**	**0**	**113,500**
101 인건비		107,600	0	107,600
01 보수		107,600	0	107,600
○ 사무보조 기본급(법정부담금 포함)	2,637,400원*10개월	26,374	0	26,374
○ 연가보상비	11,485원*8시간*9개월	826	0	826
○ 강사비	40,000원*30시간*67개 클럽	80,400	0	80,400
201 일반운영비		5,900	0	5,900
03 행사운영비		5,900	0	5,900
○ 시군체육회 기본운영비	180,000원*1회	180	0	180
○ 클럽 운영비	80,000원*67개 클럽	5,360	0	
○ 도체육회 운영비(전산구축비)	360,000원*1회	360	0	360
시교육청비보조금 사업		**268,000**	**0**	**268,000**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시비50%(134,000천원) 교육청50%(134,000천원)**	**268,000**	**0**	**268,000**
101 인건비		101,297	0	101,297
01 보수		101,297	0	101,297
○ 강사수당		93,600	0	93,600
· 육상, 수영, 배드민턴 1	80,000원*234회*3명	56,160	0	56,16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배드민턴 2, 3	80,000원*234회*2명	37,440	0	37,440
○ 일일근로 수당		7,697	0	7,697
· 육상, 수영, 배드민턴 1	9,620원*8시간*4일*5회*3명	4,618	0	4,618
· 배드민턴 2, 3	9,620원*8시간*4일*5회*2명	3,079	0	3,079
201 일반운영비		162,203	0	162,203
01 사무관리비		30,425	0	30,425
○ 사무용품비(문구류, 복사지 등)	100,000원*1회*5개 종목	500	0	500
○ 대관료		26,400	0	26,400
· 배드민턴 2, 3	500,000원*12개월*2종목	12,000	0	12,000
· 육상	200,000원*12개월*1종목	2,400	0	2,400
· 수영, 배드민턴 1	500,000원*12개월*2종목	12,000	0	12,000
○ 회계감사비	505,000원*1회*5개 종목	2,525	0	2,525
○ 방역용품(체온계, 구급약품 등)	200,000원*1회*5종목	1,000	0	1,000
02공공운영비		2,000	0	2,000
○ 보험료(주최자배상책임보험)	20,000원*20명*5종목	2,000	0	2,000
03 행사운영비		129,778	0	129,778
○ 홍보비(현수막, 전단지 등)	200,000원*1회*5종목	1,000	0	1,000
○ 대회 출전비(현지경비)		70,000	0	70,000
· 육상, 수영, 배드민턴 1	3,500,000원*4회*3종목	42,000	0	42,000
· 배드민턴 2, 3	3,500,000원*4회*2종목	28,000	0	28,000
○ 전지훈련비(동하계훈련 포함)		10,000	0	10,000
· 육상, 수영, 배드민턴 1	1,000,000원*2회*3종목	6,000	0	6,000
· 배드민턴 2, 3	1,000,000원*2회*2종목	4,000	0	4,000
○ 용품비 구입		48,778	0	48,778
· 육상	3,035,000원*1회*1종목	3,035	0	3,035
· 수영	9,436,000원*1회*1종목	9,436	0	9,436
· 배드민턴 1	5,436,000원*1회*1종목	5,436	0	5,436
· 배드민턴 2	15,436,000원*1회*1종목	15,436	0	15,436
· 배드민턴 3	15,435,000원*1회*1종목	15,435	0	15,435
203 업무추진비		4,500	0	4,5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	0	4,500
· 각종 회의개최(운영위원회 등)	300,000원*3회*5종목	4,500	0	4,500
교육청비보조금 사업		**0**	**135,000**	**△135,000**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교육청매칭사업비)	**시비 매칭사업(135,000천원)**	**0**	**135,000**	**△135,000**
101 인건비		0	48,000	△48,000
01 보수		0	48,000	△48,000
○ 기본급		0	0	0
· 사무보조	1,800,000원*1명*12월	0	0	0
○ 4대보험 부담금		0	0	0
· 국민연금	21,600,000원*4.5%	0	0	0
· 국민건강보험	21,600,000원*3.335%	0	0	0
· 장기요양보험	720,000원*10.25%	0	0	0
· 고용보험	21,600,000원*1.85%	0	0	0
· 산재보험	21,600,000원*0.933%	0	0	0
○ 사무보조 초과근무 수당	12,918원*1명*10시간*12월	0	0	0
○ 사무보조 퇴직적립금	1,800,000원*1/12월*12월	0	0	0
○ 사무보조 연가보상비	68,896원*7일	0	0	0
○ 강사수당		0	48,000	△48,000
· 육상, 수영, 테니스		0	0	0
· 배드민턴 2, 3	80,000원*300회*2명	0	48,000	△48,000
201 일반운영비		0	87,000	△87,000
01 사무관리비		0	18,210	△18,210
○ 대관료		0	16,800	6,000
· 육상	400,000원*12개월	0	4,800	△4,800
· 수영, 배드민턴 1	500,000원*12개월*2개 종목	0	12,000	△12,000
○ 회계감사비	282,000원*5개 종목	0	1,410	△1,410
03 행사운영비		0	66,790	△66,790
○ 홍보비(현수막, 전단지 등)	400,000원*5개 종목	0	2,000	△2,000
○ 보험료	15,000원*20명*5개 종목	0	1,500	△1,500
○ 사무용품 구입		0	0	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대회출전비(육상, 수영, 배드민턴 1)	4,000,000원*3회*3개 종목	0	36,000	△36,000
○ 훈련용품 구입		0	29,290	△29,290
· 배드민턴 1	8,018,000원*1회	0	8,018	△8,018
· 배드민턴 2	2,018,000원*1회	0	2,018	△2,018
· 배드민턴 3	2,018,000원*1회	0	2,018	△2,018
· 육상	9,218,000원*1회	0	9,218	△9,218
· 수영	8,018,000원*1회	0	8,018	△8,018
202 여비		0	0	0
01 국내여비		0	0	0
· 국내여비		0	0	0
자체사업		**313,701**	**367,021**	**△53,320**
이사회비 사업		**235,126**	**290,442**	**△55,316**
이사회 운영		**235,126**	**290,442**	**△55,316**
101 인건비		7,080	6,720	360
01 보수		7,080	6,720	360
○ 근속수당	590,000원*12월	7,080	6,720	360
201 일반운영비		63,381	113,517	△50,136
01 사무관리비		12,833	4,300	8,533
○ 이사회(정기, 임시) 책자유인	25,000원*60부*2회	3,000	3,000	0
○ 명함제작	30,000원*60개	1,800	300	1,500
○ 체육회장상 제작	100,000원*40개	4,000	0	4,000
○ 사무운영비(문구, 현수막 등)	1,533,000원*1회	1,533	1,000	533
○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5명*5회	2,500	0	2,500
02 공공운영비		6,500	4,700	1,800
○ 우편요금	3,000원*60명*15회	2,700	2,700	0
○ 회비납부	1,000,000원*1회	1,000	1,000	0
○ 임원등기 수수료	700,000원*4회	2,800	0	2,800
○ 체육회 사무실 환경정비	1,000,000원*1식	0	1,000	△1,000
03 행사운영비		44,048	104,517	△60,469
○ 각종 위원회 회의비		7,750	8,400	△65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이사회(정기, 임시)	25,000원*60명*4회	4,000	2,400	1,600
· 운영위원회 등(인사, 스포츠공정 등)	25,000원*15명*10회	3,750	6,000	△2,250
○ 이사 워크숍	500,000원*30명*1회	15,000	30,000	△15,000
○ 이사 하계 단합대회	50,000원*100명	0	5,000	△5,000
○ 체육인의 밤	25,000,000원*1회	0	25,000	△25,000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1,000,000원*1회	0	1,000	△1,000
○ 각종 대회(전국체전, 도체전 등) 현지격려	200,000원*15명*3회	0	9,000	△9,000
○ 생활체육 플랫폼 구축사업	1,000,000원*1회	0	1,000	△1,000
○ 임원활성화(임원등기 등) 사업	2,000,000원*1회	0	2,000	△2,000
○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21,298,000원*1회	21,298	21,298	0
○ 체육회 운영 지원(연하장, 집기구입 등)	1,819,000원*1회	0	1,819	△1,819
○ 체육회장 이취임식	10,000,000원*1회	10,000	0	10,000
203 업무추진비		20,000	20,00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명절선물 등)	5,000,000원*2회	10,000	10,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0
○ 체육회 시책추진 등	5,000,000원	5,000	5,000	0
○ 체육회 시책추진(사무국) 등	3,000,000원	3,000	3,000	0
○ 체육회 임원 간담회	200,000원*10회	2,000	2,000	0
301 일반보상금		11,000	26,700	△15,700
09 실비보상금		0	2,500	△2,500
○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5명*5회	0	2,500	△2,500
12 기타보상금		11,000	24,200	△13,200
○ 이사 경조사비	100,000원*5명*12월	6,000	9,600	△3,600
○ 체육활동 피해자 위로보상	1,000,000원*1회	1,000	1,000	0
○ 종목단체 격려금	200,000원*20개 단체	4,000	11,600	△7,600
○ 전국종별체육대회 격려금	400,000원*5개 종목	0	2,000	△2,000
602 예치금		23,665	23,505	160
01 예치금		23,665	23,505	160
○ 이사회비 적립	23,665,000원*1회	23,665	23,505	16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704 예탁금		100,000	100,000	0
01 예탁금		100,000	100,000	0
○ 증권사 예탁금	100,000,000원*1회	100,000	100,000	0
회원단체회비 사업		**25,131**	**23,250**	**1,881**
회원단체 운영		**25,131**	**23,250**	**1,881**
201 일반운영비		15,091	14,210	881
01 사무관리비		6,680	6,180	500
○사무운영비(문구, 현수막, 상장, 책자 등)	2,500,000원*1회	2,000	1,500	500
○각종위원회 수당(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관리위원회등)	100,000원*5명*6회	3,000	3,000	0
○생활체육지도자 홍보 및 용품 구입비	120,000원*14명	1,680	1,680	0
02 공공운영비		930	720	210
○경기도체육회 사무국장 회비	300,000원*1회	300	300	0
○ 우편요금	3,500원*60통*3회	630	420	210
03 행사운영비		7,481	7,310	171
○ 총회, 간담회 개최 등	15,000원*65명*2회	1,950	1,950	0
○ 워크숍 개최	5,000,000원*1회	5,000	5,000	0
○ 생활체육 운영 지원(각종행사 물품, 용품, 시상품등)	531,000원*1회	531	360	171
202 여비		840	840	0
01 국내여비		840	840	0
○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	20,000원*3일*14명	840	840	0
203 업무추진비		7,200	7,20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 회원단체장 격려	50,000원*60개 회원단체	3,000	3,000	0
03 시책업무추진비		4,200	4,200	0
○ 각종위원회 간담회(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관리위원회등)	15,000원*10명*8회	1,200	1,200	0
○ 회원단체 격려	20,000원*10명*15회	3,000	3,000	0
301 일반보상금		2,000	1,000	1,000
12 기타보상금		2,000	1,000	1,000
○ 회원단체 경조사비	100,000원*20회	2,000	1,000	1,000
기타수입		**53,444**	**53,329**	**115**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체육꿈나무 육성기금		**53,444**	**53,329**	**115**
201 일반운영비		13,444	13,329	115
03 행사운영비		13,444	13,329	115
○ 대회지원		13,444	13,329	115
301 일반보상금		40,000	40,000	0
12 기타보상금		40,000	40,000	0
○ 기타보상금		40,000	40,000	0
기부금 사업		**68,729**	**75,267**	**△6,538**
기부금 사업		**68,729**	**75,267**	**△6,538**
기부금 운영		**68,729**	**75,267**	**△6,538**
201 일반운영비		68,729	64,367	4,362
01 사무관리비		4,080	11,850	△7,770
○ 법인화 행정 위탁비	5,000,000원*1회	0	0	0
○ 법인화 등기 및 각종 수수료등	3,000,000원*1회	0	0	0
○ 환경정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850,000원*1회	0	850	△850
○ 회계 및 세무업무 대리 수수료	3,000,000원*1회	0	3,000	△3,000
○ 체육회 회계프로그램 연간 사용료	스마트A(급여관리프로그램)600,000원*1회 G20(회계관리프로그램)2,400,000*1회	3,000	3,000	0
○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100,000원*5명*10회	0	5,000	△5,000
○ 렌탈비(컴퓨터 등)	90,000원*12회	1,080	0	1,080
02 공공운영비		0	517	△517
○ 우편요금	517,000원*1회	0	517	△517
03 행사운영비		64,649	52,000	12,649
○ 생활체육 활성화대회 지원	24,649,000원*1회	24,649	27,000	△2,351
○ 생활체육 활성화교실 지원	10,000,000원*4회	40,000	25,000	15,000
301 일반보상금		0	6,600	△6,600
12 기타보상금		0	6,600	△6,600
○ 체육활동 피해자 위로보상	500,000원*7회	0	3,500	△3,500
○ 각종 체육대회 입상 격려금	100,000원*31회	0	3,100	△3,100
405 자산취득비		0	4,300	△4,3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4,300	△4,300

지 출 예 산 명 세 서(안)

(단위:천원)

사업유형·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컴퓨터 구입비(세트)	1,300,000원*2대	0	2,600	△2,600
○ 책상, 의자, 파티션 등	1,700,000원*1회	0	1,700	△1,700
출연금		**50,102**	**50,000**	**102**
출연금		**50,102**	**50,000**	**102**
출연금		**50,102**	**50,000**	**102**
306 출연금		50,102	50,000	102
01 출연금		50,102	50,000	102
○ 기본재산	50,102,000원	50,102	50,000	102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2호	안건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의결주문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부의근거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2호

3.제안사유

상위 단체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4.주요골자

- 회장선거 관리규정

·회장선거 관련 제재조치에 있어 제33조 제1항 제2호 중 제2호 오기 삭제

5.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상위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 하고 함.

2. 주요골자

1) 회장선거 관련 제재조치에 있어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1항 제2호로 되어있어, 제2호 삭제 (별지 제8호 서식)

3.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 “별첨 1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참조”

5.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전문) : “별첨 3 참조“

【별첨1】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를 제5장으로 개정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33조제1항제2호의"를 "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장 내지 제6장을 각각 제6장 내지 제7장으로 개정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사무국
입안자	담 당 국 장 직위 · 성명	사무국장 이 인 철
	담 당 자 직위 · 성명	총무팀장 최 주 일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생략)**	**제1장 총칙**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9조 ~ 제15조 (생략)**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9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3장 호보자 자격 및 등록 **제16조 ~ 제18조 (생략)**	**제3장 호보자 자격 및 등록** **제16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4장 선거운동 **제19조 ~ 제26조 (생략)**	**제4장 선거운동** **제19조 ~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제27조 ~ 제33조 (생략)** **제33조의2**(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제33조제1항제2호의 제재에 대한 통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제5장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제27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삭제)----------
제5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 ~ 제41조 (생략)**	**제6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42조 ~ 제53조 (생략)**	**제6장 보칙** **제42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제5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 ~ 제41조 (생략)**	**제7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부 칙(신설) **제1조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3】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2021. 6. 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2. 7. 8.
개정 2022. 12. 8.
개정 2023. 1. 3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24조에 따라 본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제 2 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남양주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7. 8.)

제 3 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남양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선거일 전 27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신설 2021. 12. 21.)
2. 예비선거인 명부의 작성 (신설 2021. 12. 21., 2022. 7. 8.)
3. 선거인명부의 작성 (신설 2021. 12. 21.)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신설 2021. 12. 21.)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2021. 12. 21.)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신설 2021. 12. 21.)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신설 2021. 12. 21.)

8. 회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정책토론회 개최여부 결정 및 개최(신설 2021. 12. 21., 2022. 7. 8.)

9. 정관 제24조제10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신설 2021. 12. 21.)

10.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 (신설 2022. 7. 8.)

11.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된다.
(신설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⑦ 삭제 (2021. 12. 21.)

⑧ 삭제 (2021. 12. 21.)

제 3 조의2(공정선거지원단) 삭제 (2021. 12. 2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1. 12. 21.)

1. 시·도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신설 2021. 12. 21.)

2. 제9조에 따라 예비선거인을 추천하는 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신설 2021. 12. 21., 2022. 7. 8.)

3. 정당의 당원 (신설 2021. 12. 21.)

4. 제16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설 2022. 7.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체육회에 위촉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2022. 7. 8.)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신설 2021. 12. 21.)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신설 2022. 7. 8.)

제 2 장 삭제 (2021. 12. 21.)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신설 2021. 12. 21.)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2. 21.)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체육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체육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서류를 해당 회장선거 당선인의 임기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⑥ 체육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7. 8.)

제6조(선거관리 위탁신청) ① 체육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서면으로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위탁신청 기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 제29조제6항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 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③ 체육회는 제2항의 정기총회 일을 제1항에 따른 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 신청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제7조(선거기간) ① 회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로 한다.(개정 2021. 12. 21.)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1.)

제8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1.)

1.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개정 2021. 12. 21.)
2. 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③ 선거일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④ 체육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제 2 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신설 2021. 12. 21.)

제9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1.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신설 2021. 12. 21.)
2.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②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1. 12. 21.)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정관 제11조제1항의 대의원이거나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개정 2022. 7. 8.)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단체의 회원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제2항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신설 2021. 12. 21.)

⑤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신설 2021. 12. 21., 2022. 7. 8.)

제10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 (신설 2021. 12. 21.)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00명 이상 (신설 2021. 12. 21.)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신설 2021. 12. 21.)

4.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신설 2021. 12. 21.)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신설 2021. 12. 21.)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시·군·구 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③ 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신설 2021. 12. 21.)
2.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21. 12. 21.)

④ 제1항의 인구수는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료로 하고,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신설 2021. 12. 21.)

제11조(예비선거인의 추천)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체육회의 회원단체(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제10조에 따른 각 단체별 선거인수를 통보하고,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②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별지 제3호 및 4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③ 정회원단체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④ 위원회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⑤ 위원회는 체육회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예비선거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7. 8.)

제12조(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예비선거인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9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위원회는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예비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이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③ 위원회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비선거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④ 위원회는 추천된 예비선거인 중에서 중복된 사람을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으로 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7. 8.)

⑤ 각 추천단체는 예비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전산시스템에서 이미 완료한 때에는 해당 예비선거인의 동의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7. 8.)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추천 받은 예비선거인 중에서 제10조에 따라 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그 열람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④ 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사람을 추첨할 때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가진 외부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⑤ 위원회는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할 수 있다. (신설 2022. 7. 8.)

제3장 삭제 (2021. 12. 21.)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① 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와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통씩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7. 삭제 (2021. 12. 21.)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으로 하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그 열람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④ 후보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오전 9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본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⑤ 삭제 (2022. 7. 8.)

⑥ 후보자는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⑧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제15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선관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등”이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④ 제3항의 이의제기 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7. 8.)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신설 2021. 12. 21.)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1. 정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신설 2021. 12. 21.)
3. 국회의원 (신설 2021. 12. 21.)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남양주시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7. 삭제 (2021. 12. 21.)

③ 체육단체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단체의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체육단체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2. 21.)
④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신설 2021. 12. 21.)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개정 2022. 7. 8.)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정부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개정 2022. 7. 8.)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⑧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⑨ 체육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⑩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에 하되, 그 마감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8.)

제17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1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관위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18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신설 2021. 12. 21.)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신설 2021. 12. 21.)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개정 2022. 7. 8.)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정관 제30조제1항의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8.)

라. 정관 제24조제6항 및 제16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4조제7항 및 제16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개정 2022. 7. 8.)

3.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1. 12. 21., 2022. 7. 8.)
4.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신설 2021. 12. 21., 2022. 7. 8.)
5. 제17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21. 12. 21.)
6. 삭제 (2022. 7. 8.)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③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된다. (신설 2021. 12. 21.)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④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후보자는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체육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제 4 장 선거운동 (개정 2022. 7. 8.)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7. 8.)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신설 2022. 7. 8.)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개정 2022. 7. 8.)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단,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 (개정 2022. 7. 8.)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개정 2022. 7. 8.)

②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정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2. 7. 8.)

1.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주소 (개정 2022. 7. 8.)
2.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개정 2022. 7. 8.)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2. 7. 8.)

⑦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다. (개정 2022. 7. 8.)

제25조의2(정책토론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위원회가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1.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2.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②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운영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위원회는 후보자 모두에게 토론회의 공평한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토론회 운영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 할 수 있으며,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④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⑤ 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⑥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⑨ 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에 대한 중계와 이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를 영상녹화하여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8.)

⑩ 위원회는 제44조의7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를 선거일 전 영상녹화하여 그 영상녹화물을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시간에 방영하거나,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투표 전에 게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을 선거인에게 알려야한다. (신설 2022. 7. 8.)

제5장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신설 2022. 7. 8., 2023. 1. 31.)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위탁선거법」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7. 8.)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권자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2. 7. 8.)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개정 2022. 7. 8.)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제30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 7. 8.)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8.)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8.)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삭제 (2022. 7. 8.)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부터 선거일까지 (개정 2021. 12. 21., 2022. 7. 8.)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개정 2021. 12. 21., 2022. 7. 8.)

제31조(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체육회 임직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7. 8.)

② 체육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8.)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신설 2022. 7. 8.)

   가.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5. 제7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신설 2022. 7. 8.)

6. 제7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신설 2022. 7. 8.)

③ 체육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7. 8.)

1. 제2항제4호 각 목에 따른 행위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23조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한다. (신설 2022. 7. 8.)

⑤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기간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 7. 8.)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8.)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공을 약속하는 행위 (개정 2022. 7. 8.)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개정 2022. 7. 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22. 7. 8.)
5.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신설 2022. 7. 8.)

②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④ 삭제 (2022. 7. 8.)

제32조의2(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①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 7. 8.)

제32조의3(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32조의4(사위투표 금지)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32조의5(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선관위의 위원·직원, 「위탁선거법」 제10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 위 원회 위원, 그 밖에 회장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 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 는 행위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 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7. 8.)

제32조의6(정당 등 표방 금지)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32조의7(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7. 8.)

제32조의8(시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중지,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32조의9(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40조제1항 이외의 회장선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 또는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이의제기(이하 “신고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등을 접수한 경우, 선거 위반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5장 삭제 (2021. 12. 21.)

제33조(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위탁선거법」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정관 및 이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8.)

가.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신설 2021. 12. 21.)

나. 선거권 박탈 (개정 2022. 7. 8.)

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요청(추후 체육단체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 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한다) (개정 2022. 7. 8.)

라.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개정 2022. 7. 8.)

마.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2. 제1호 재제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요청, 경고 또는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가. 삭제 (2022. 7. 8.)

나. 삭제 (2022. 7. 8.)

다. 삭제 (2022. 7. 8.)

라. 삭제 (2022. 7. 8.)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1.)

1.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2. 제1항제1호 라목부터 마목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개정 2022. 7. 8.)

③ 선관위가 선거 위반행위자를 위원회 또는 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위원회 또는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2022. 7. 8.)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8.)

1.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2.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⑤ 체육단체의 대표자나 체육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이 그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본 조에 따라 행위자를 제재하는 외에 체육단체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마목 또는 제1항제2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체육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 2022. 7. 8.)

제33조의2(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제33조제1항의 제재에 대한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3. 1. 31.)

1. 서면에 의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
2.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 단, 전자우편은 규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정보제공이 동의된 선거인에 한함.

3.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 (본조신설 2022. 7. 8.)

제6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신설 2021. 12. 21., 2023. 1. 31.)

제34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7. 삭제 (2021. 12. 21.)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35조(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개정 2022. 7. 8.)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제36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신설 2022. 7. 8.)

제37조(기탁금의 처리)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1. 당선인이 된 경우 (개정 2021. 12. 21.)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개정 2021. 12. 21.)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1. 12. 21.)

제38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등록한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시각 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제39조(회장 당선인 공고) 체육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제40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 선관위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③ 삭제 (2021. 12. 21.)

제41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①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제7장 보 칙 (신설 2021. 12. 21., 2023. 1. 31.)

제42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이 규정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 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③ 기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1. 12. 21.)

제43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1.)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신설 2021. 12. 21.)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신설 2021. 12. 21.)
3.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신설 2021. 12. 21.)

②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6장 삭제 (2021. 12. 21.)

제44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12. 21.)

제44조의2(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본조신설 2022. 7. 8.)

제44조의3(위원회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33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갖는다.

② 누구든지 선거 위반행위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44조의4(금지행위 등의 공지) 체육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그 적용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44조의5(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체육회는 예비선거인 추첨 및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 추첨 및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회장선거 사무의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8.)

제44조의6(선거사무 지원) ① 위원회는 선거사무지원단 설치를 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8.)

제44조의7(선거운영의 예외 등) 이 규정 제21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8.)

제45조(그 외의 사항) ① 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1. 체육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신설 2022. 7. 8.)
2. 체육회 선거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개설되어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신설 2022. 7. 8.)
3. 관보나 체육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신설 2022. 7. 8.)
4.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 (신설 2022. 7. 8.)

②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③「위탁선거법」및 그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위탁선거법」및 그 시행규칙이 우선한다. (신설 2021. 12. 21.)

제46조(남양주시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체육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7. 8.)

제47조 삭제 (2021. 12. 21.)

제48조 삭제 (2021. 12. 21.)

제7장 삭제 (2021. 12. 21.)

제49조 삭제 (2021. 12. 21.)

제50조 삭제 (2021. 12. 21.)

제51조 삭제 (2021. 12. 21.)

제51조의2 삭제 (2021. 12. 21.)

제52조 삭제 (2021. 12. 21.)

제53조 삭제 (2021. 12.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원 위 촉 승 낙 서

1. 성 명: (한자:)
2. 생 년 월 일:
3. 전 화 번 호:
4. 전자우편(이메일):
5. 주 소 :

위 본인은 제O대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을승낙하며, OO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합니다.

또한, 본인은 승낙일 현재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하며, 관련 법령과 남양주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촉 승낙인 ○ ○ ○ ㊞

남양주시체육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공 고

제○대 남양주시체육회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별지 제3호 서식]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개인이메일)	비 고

주: 1. 단체명은 예비선거인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강원, 강원도축구협회, 강릉시 체육회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남양주시체육회 대의원, 제9조제1항제1호 대의원)

제00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인(00체육회 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인 명부 작성 * 투표시 본인 확인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 이메일)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회장선거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되고,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규·절차의 안내 통지 등에도 제공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선거인, 제9조제1항제2호 대의원)

[단체명 :]

제00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 선거운영위원회는 00체육회 예비선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군, 소속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예비선거인 및 선거인 추첨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추첨을 통해 선거인으로 선정 시) * 투표시 본인 확인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개인 이메일)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비선거인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회장선거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비선거인에서 제외됩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규·절차의 안내 통지 등에도 제공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2. 7. 0.)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보안서약서 포함)

1. 후 보 자 명:
2. 생 년 월 일:

위 본인은 제O대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정보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남양주시체육회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남양주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취급 준수사항
  1.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년 월 일

후보자 ○ ○ ○ ㊞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선거인명부 누락,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접수·처리 결과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명	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통지일자

[별지 제7호 서식]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남양주시체육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남양주시체육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table>
<tr><td colspan="2">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r><td colspan="2">< 후보자 인적사항 등 ></td></tr>
<tr><td>성 명</td><td></td></tr>
<tr><td>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td><td></td></tr>
<tr><td>징계사실 유무</td><td>☐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td></tr>
<tr><td colspan="2">< 징계내역 > ※ 위 “해당사항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에 한해 작성</td></tr>
<tr><td colspan="2">① 징계내역 1</td></tr>
<tr><td>징계일자</td><td>년 월 일</td></tr>
<tr><td>징계사유</td><td>☐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td></tr>
<tr><td>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td><td>☐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선수관리담당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td></tr>
<tr><td colspan="2">② 징계내역 2</td></tr>
<tr><td></td><td>이하생략</td></tr>
<tr><td colspan="2">남양주시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체 장 명 (직인)</td></tr>
</table>

[별지 제9호 서식]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남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남양주시체육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당시 직위 :

(○○체육회/추천단체명)은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체육회/추천단체명)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
(한 자)</td><td></td><td>생 년 월 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삭제요청 사항</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이의신청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회장선거관리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td></tr>
</table>

[별지 제13호 서식]

회장선거에 관한 신고 등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고 등
신청인</td><td>성 명</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내용 및
사유</td><td>신고 등 내용</td><td></td></tr>
<tr><td>신고 등 사유</td><td></td></tr>
<tr><td colspan="3">년 월 일 실시 남양주시체육회장선거에 대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고 또는 이의제기자 ○ ○ ○ (서명)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td></tr>
</table>

주: 1. 신고 또는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또는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지)·(경고)·(시정명령) 통지서

1. 처 분 대 상:
2. (중지)·(경고)·(시정명령) 내용: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귀하가 제O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하였기에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지)·(경고)·(시정명령) 처분하오니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22. 7. 0.)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통보서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OOO)이 제O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6호 서식]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문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OOO)이 제O대 남양주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7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한 남양주시체육회장선거에 대하여 남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서명)

남양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3호	안건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의결주문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부의근거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2호

3.제안사유

회장 인준 절차 강화를 통한 단체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4.주요골자

- 남양주시 읍면동체육회 회장 인준 절차 강화

·읍면동체육회장 인준 요청 시 해당 읍면동장의 인준동의서 첨부

5.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남양주시 읍면동체육회 회장 인준 절차 강화를 통한 단체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1) 남양주시 읍면동체육회 회장 인준 절차 강화

- 읍면동체육회장 인준 요청 시 해당 지역 읍면동장의 인준동의서 첨부

3.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안 : “별첨 1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참조”

5.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전문) : “별첨 3 참조“

【별첨1】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개정안

남양주시체육회 읍면동체육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 중, “회장은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를 “회장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인준동의서 첨부 후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사무국
입안자	담당국장 직위·성명	사무국장 이 인 철
	담 당 자 직위·성명	진흥팀장 박 광 혁

【별첨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 제23조 (생략)	제1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 ① ~ ⑤ (생략) ⑥ 회장은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남양주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24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장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인준 동의서 첨부 후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 ---------- ----------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 ~ 제54조 (생략)	제25조 ~ 제54조 (현행과 같음)
부 칙(신설)	**부 칙**
제1조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3】

읍면동체육회 규정

제정 2021. 6. 9.

전부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1. 31.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6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라 체육회의 지회인 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는 해당 읍·면·동명을 포함하여 ‘○○○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영문 명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2조(목적) 읍·면·동체육회는 체육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지역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한다. (개정 2021. 12. 21.)

제3조(소재지) 읍·면·동체육회의 사무소는 남양주시 각 읍·면·동에 둔다. (개정 2021. 12. 21.)

제4조(사업) ① 읍·면·동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에 가입한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개정 2021. 12. 21.)
2. 읍·면·동체육회 내 각종 체육대회 개최 (개정 2021. 12. 21.)
3. 남양주시체육회가 개최하는 대회 참가 및 남양주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개정 2021. 12. 21.)

4. 읍·면·동체육회의 선수·지도자 및 심판 등의 양성 (개정 2021. 12. 21.)
5. 읍·면·동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개정 2021. 12. 21.)
6. 읍·면·동주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개정 2021. 12. 21.)
7. 읍·면·동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개정 2021. 12. 21.)
8. 읍·면·동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개정 2021. 12. 21.)
9. 읍·면·동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개정 2021. 12. 21.)
10. 그 밖의 지역 체육 진흥 및 읍·면·동체육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 12. 21.)

제5조(읍·면·동 체육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읍·면·동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 ① 본회 읍·면·동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는 산하에 지역별 체육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본회 가입 종목 3개 이상, 50명 이상의 동호인 및 체육 관련 관계자, 해당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읍·면·동체육회는 본회 사업을 위해 연 회비 360,000원을 당해 연도 3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는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가 본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 의원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3장 대의원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①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 산하 기관·사회단체장 또는 종목별 체육 관련 관계자 등으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은 다른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⑦ 삭제 (2021. 12. 21.)

⑧ 삭제 (2021. 12. 21.)

⑨ 삭제 (2021. 12. 21.)

제9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2. 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개정 2021. 12. 21.)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5. 기타 중요 사항 (개정 2021. 12. 21.)

제10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읍·면·동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1.)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읍·면·동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1. 12. 21.)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1. 12. 21.)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1. 12. 21.)
4.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1. 12. 21.)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 12. 21.)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당해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⑦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⑧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⑨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제1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개정 2021. 12. 21.)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021. 12. 21.)

제14(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 같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7. 삭제 (2021. 12. 21.)
8. 삭제 (2021. 12. 21.)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개정 2021. 12. 21.)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읍·면·동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4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21.)

1.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 12. 21.)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개정 2021. 12. 21.)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21. 12. 21.)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1.)
8. 기타 중요사항 (개정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제1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1. 12. 21.)
2. 제26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1. 12. 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18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읍·면·동체육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제19조(서면결의) 읍·면·동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③ 삭제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읍·면·동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개정 2021. 12. 21.)
2. 부회장 2인 이상 (개정 2021. 12. 21.)
3. 이사 10인 이상 (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21. 12. 21.)
4. 감사 2인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다른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해당 읍·면·동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 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읍·면·동체육회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 기구는 별도로 구성하며, 본회「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읍·면·동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3. 읍·면·동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읍·면·동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⑤ 읍·면·동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회장 선출 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읍· ·동체육회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체육회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1.)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개정 2021. 12. 21.)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21.)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개정 2021. 12. 21.)

⑩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⑪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22조(선거의 중립성) ①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관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이외 체육회 관계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③ 남양주시체육회는 읍·면·동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⑤ 삭제 (2021. 12. 21.)

⑥ 삭제 (2021. 12. 21.)

⑦ 삭제 (2021. 12. 21.)

제23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본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④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24조(임원의 선임) ① 읍·면·동체육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1. 12. 21.)

③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4.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5. 비경기인(학,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6. 특정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⑥ 회장은 해당지역 읍면동장의 인준동의서 첨부 후 남양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남양주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1.)

⑦ 남양주시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의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⑧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⑨ 삭제 (2021. 12. 21.)

⑩ 삭제 (2021. 12. 21.)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읍·면·동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1.)

1. 읍·면·동체육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21. 12. 21.)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1. 12. 21.)
3. 재산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본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21. 12. 21.)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개정 2021. 12. 21.)

⑤ 임원이 체육회 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개정 2021. 12. 21.)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개정 2021. 12. 21.)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21. 12. 21.)

⑥ 회장을 비롯한 비상금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⑦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1. 12. 21.)

⑧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1. 12. 21.)

⑨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개정 2021. 12. 21.)

제2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21.)

1. 삭제 (2021. 12. 21.)
2. 삭제 (2021. 12. 21.)
3. 삭제 (2021. 12. 21.)
4. 삭제 (2021. 12. 21.)
5. 삭제 (2021. 12. 21.)
6. 삭제 (2021. 12. 21.)
7. 삭제 (2021. 12. 21.)
8. 삭제 (2021. 12. 21.)
9. 삭제 (2021. 12. 21.)
10. 삭제 (2021. 12. 21.)
11. 삭제 (2021. 12. 21.)
12. 삭제 (2021. 1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21.)
13. 삭제 (2021. 12. 21.)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1. 12. 21.)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1. 12. 21.)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기만료 후 60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개정 2021. 12. 2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1.)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1. 12. 21.)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1. 12. 21.)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1.)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항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1.)

1. 제24조제6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개정 2021. 12. 21.)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21. 12. 21.)
3. 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개정 2021. 12. 21.)

제6장 동호인 클럽

제29조(지위 및 명칭) ① 동호인클럽은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으로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개정 2021. 12. 21.)

② 동호인클럽은읍·면·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읍·면·동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1. 12. 21.)

제30조(동호인클럽의 총회) ① 동호인 클럽의 대의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1. 동호인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한 동호인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1.)

제31조(총회의 소집) 동호인클럽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동호인클럽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21.)

제32조(동호인클럽의 규정 등) ① 동호인클럽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33조(임원 인준 등) ① 동호인클럽에서 선출 및 변경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에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에 서면으로 보고가 완료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클럽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읍·면·동체육회에 인준 취소 도는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인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육발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준이 취소된 단체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삭제 (2021. 12. 21.)

제34조(규정 승인) ① 동호인클럽은 제32조에 따라 읍·면·동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읍·면·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읍·면·동체육회은 동호인클럽으로부터 보고받은 규정 변경 및 임원선출 또는 변경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동호인클럽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동호인클럽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읍·면·동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호인클럽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④ 읍·면·동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 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동호인클럽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호인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36조(동호인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인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읍·면·동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읍·면·동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에 수용 않을 경우 본회는 본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승부조작 및 단체 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 12. 21.)
2. 정부 및 경기도 감사 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021. 12. 21.)
3. 본회 규정과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개정 2021. 12. 21.)
4. 60일 이상 장기간 읍·면·동 체육회장 궐위 또는 사고 (개정 2021. 12. 21.)
5. 읍·면·동체육회의 재정 악화, 가입 회원 중 50% 이상이 탈퇴, 각종 파벌과 분쟁으로 원만한 사업 수행·운영이 불가할 경우 (개정 2021. 12. 21.)

②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별도로 둔다. (개정 2021. 12. 21.)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읍·면·동체육회는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 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②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1.)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퍼센트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1.)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읍·면·동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1.)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개정 2021. 12. 21.)
2. 체육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개정 2021. 12. 21.)
3.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개정 2021. 12. 21.)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개정 2021. 12. 21.)
2. 스포츠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12. 21.)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12. 21.)
4. 인원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12.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개정 2021. 12. 21.)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개정 2021. 12. 21.)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 또는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⑤ 이 규정 외에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정 및 경기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체육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개정 2021. 12. 21.)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개정 2021. 12. 21.)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21. 12. 21.)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21. 12. 21.)
2. 부동산 (개정 2021. 12. 21.)
3. 기 금 (개정 2021. 12. 21.)

4. 운영 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개정 2021. 12. 21.)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41조(재원) 읍·면·동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읍·면·동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단체의 회비 (개정 2021. 12. 21.)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개정 2021. 12. 21.)
3. 기부금 및 찬조금 (개정 2021. 12. 21.)
4. 사업 수익금 (개정 2021. 12. 21.)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개정 2021. 12. 21.)
6.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개정 2021. 12. 21.)
7. 기타 수입금(동호인 등록비 등) (개정 2021. 12. 21.)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읍·면·동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개정 2021. 12. 21.)
2. 차기 회계연도 목적 사업비로 이월 (개정 2021. 12. 21.)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개정 2021. 12. 21.)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읍·면·동체육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읍·면·동체육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재산 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1.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 단체, 본회,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 (개정 2021. 12. 21.)
2.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1.)
3. 기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시·도 종목 단체, 본회, 읍·면·동체육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21. 12. 21.)

제45조(회계연도) 읍·면·동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 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게시판, 전재 매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회계 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읍·면·동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읍·면·동체육회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2. 21.)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1.)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제10장 보 칙

제50조(해산 및 탈퇴) ① 읍·면·동체육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 및 탈퇴 결의로 해산·탈퇴 할 수 있으며,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51조(규정 변경) ①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본회가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52조(규정 제·개정 등) ① 읍·면·동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읍·면·동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53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읍·면·동체육회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읍·면·동체육회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읍·면·동체육회가 본회의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제54조(제한사항) ① 읍·면·동체육회가 본회의 규정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승인(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4호	안건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승인(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의결주문 :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6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2호 제8호

3.제안사유 :

신규 가입 신청한 종목단체에 대하여, 가입 요건 충족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판단됨에 우리시 회원단체로 가입승인 하고자 함.

4.주요골자

등 급	단체명	회 장	임원현황	단체현황	체육회 활동 이력
정회원	당구	양길웅	총 19명	9개 클럽 440명	2016~2022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인정단체	에어로빅힙합	양인경	총 16명	7개 클럽 147명	-

5.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2023년 남양주시 당구연맹 가입승인(안)

1 관련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6조(조직) 및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 남양주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 제2조(정의), 제3조(가입신청서류),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 요건)

2 종목소개

○ 당구는 규격화된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공을 놓고 긴 막대기인 큐로 쳐서 룰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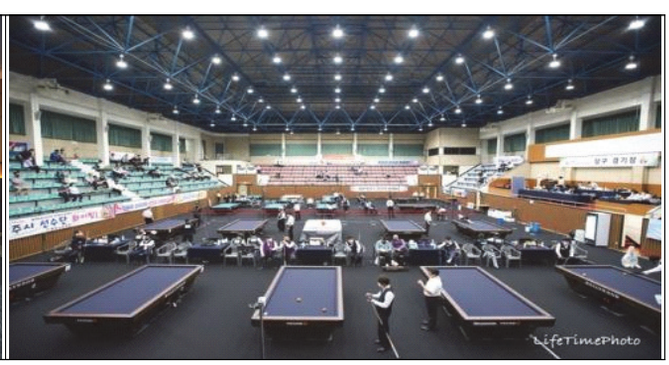

3 단체현황

성 명	한 글	양 길 웅	생년월일	70. 02. 15.(만 52세)
	한 자	梁 吉 雄	연 락 처	010-8926-3372
주 소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번길 39 삼익아파트 108동 1602호		
직 업		빌보드 당구 유통 대표		
임원현황		총 19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5명, 감사 1명)		
단체현황		9개 클럽 440명		
경력사항		· 前 대진학원 원장		

4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이상없음**

연번	인정단체 가입요건	검토결과
1	전국 및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	유일 단체
2	남양주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	요건 충족
3	3개 이상의 동호회나 클럽이 조직되어 있는 단체	8개 클럽
4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2회 개최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 될 것	발전성 높음
6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 규정이 제정 되어 있을 것	2022. 4. 7.(목) 제정
7	경기도 상위 단체 인준 결과	인준동의서 발급 완료

○ 활동사항

- ‘22. 4. 7.(목) : 창립총회개최
- ‘22. 11. 2.(수) : 경기도당구연맹 임원인준동의서 발급
- ‘22. 11. 6.(일) : 2022년 제1회 남양주시 당구대회
  - ▸장 소 : 오남 SM 당구장외 3개 구장
  - ▸개최종목 : 4구, 여성부, 케롬4그룹

○ 종합검토결과

- 당구연맹은 현재 **프로당구협회(PBA) 프로리그 개설 및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종목** 임.
- 아울러 당구는 **경기도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써, 우리시 정식가입단체는 아니지만 남양주시 대표선수로 2016년부터 대회 출전 함.**
- 이에, 당구의 가입을 통한, **남양주시체육회 종목의 다양화 및 남양주시가 당구의 메카로 자리잡을 있도록 “정회원 단체”** 로 가입 상정 하고자 함.

임원 및 대의원 명단

○ 임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거주지
1	회 장	양*웅	1970년	남	와부읍
2	부회장	유*간	1972년	남	진접읍
3	〃	손*진	1971년	남	금곡동
4	이 사	곽*민	1985년	남	평내동
5	〃	권*필	1957년	남	진접읍
6	〃	김*겸	1961년	남	진접읍
7	〃	나*민	1958년	남	진접읍
8	〃	박*양	1963년	남	진접읍
9	〃	박 *	1977년	남	화도읍
10	〃	박*규	1968년	남	진접읍
11	〃	성*연	1977년	남	진접읍
12	〃	윤 *	1974년	남	다산동
13	〃	이*용	1965년	남	진접읍
14	〃	이*수	1980년	남	진접읍
15	〃	장*재	1967년	남	진접읍
16	〃	장*국	1991년	남	다산동
17	〃	정*수	1969년	남	진접읍
18	〃	조*현	1974년	남	퇴계원면
19	감 사	김*기	1971년	남	호평동

○ 대의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1	회 장	양*웅	1970년	남	와부읍
2	대의원	김*곤	1969년	남	퇴계원면
3	〃	김*식	1983년	남	진접읍
4	〃	송*석	1982년	남	화도읍
5	〃	안*석	1975년	남	화도읍
6	〃	유*정	1973년	남	진접읍
7	〃	조*연	1973년	남	평내동
8	〃	최*부	1967년	남	별내동
9	〃	황*중	1984년	남	와부읍
10	〃	조*윤	1968년	남	와부읍

2023년 남양주시 에어로빅힙합협회 가입승인(안)

1 관련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6조(조직) 및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 남양주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 제2조(정의), 제3조(가입신청서류),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 요건)

2 종목소개

○ 에어로빅힙합은 편곡이나 음향효과를 사용하여 주제의 내용이나 움직임과 어울러져 창의력, 퍼포먼스 등 자기 자신의 개성 표현하는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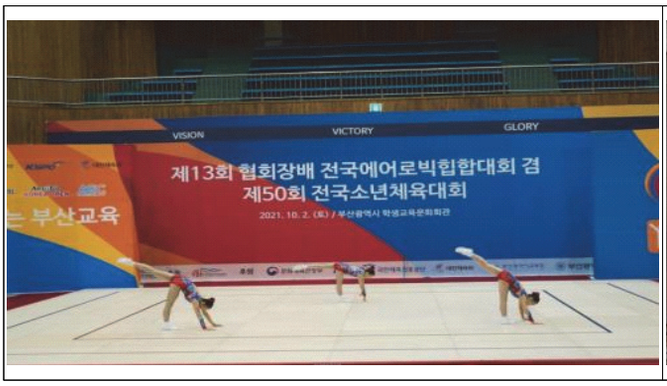

3 단체현황

성 명	한 글	양 인 경	생년월일	72. 03. 02.(만 50세)
	한 자	梁 仁 慶	연 락 처	010-4442-7729
주 소		남양주시 도농로34, 플루리움 205-503		
직 업		Y. turn 대표		
임원현황		총 16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1명, 감사 2명)		
단체현황		7개 클럽 147명		
경력사항		· 現 NAC 한국에어로빅 남양주시지부 운영		

4 검토결과

○ 검토결과 : **이상없음**

연번	가 입 요 건	검토결과
1	전국 및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	유일 단체
2	남양주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단체	요건 충족
3	3개 이상의 동호회나 클럽이 조직되어 있는 단체	7개 클럽
4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1회 개최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 될 것	발전성 높음
6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 규정이 제정 되어 있을 것	2022. 9. 23.(금) 제정
7	경기도 상위 단체 인준 결과	인준동의서 발급 완료

○ 활동사항

- ‘22. 9. 23.(금) : 창립총회개최
- ‘22. 10. 26.(수) : 경기도에어로빅힙합협회 임원인준동의서 발급
- ‘22. 6. 26.(일) :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에어로빅힙합대회 참가
  - ▸참가결과 : 개인전 2위

○ 종합검토결과

- 에어로빅힙합협회는 **대한체육회(정회원) 및 경기도체육회(준회원) 가입**되어 있는 종목이며, **에어로빅힙합의 경우 파리올림픽부터 정식채택 된 종목**임.
- 다만 에어로빅힙합의 클럽 규모 및 협회 운영경험이 낮다고 판단됨.
- 이에 **에어로빅힙합협회의 운영과 대회 개최 등 우리시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기에 “인정단체”로 가입** 상정하고자 함.

임원 및 대의원 명단

○ 임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거주지
1	회 장	양*경	1953년	여	다산동
2	부회장	김*란	1961년	여	오남읍
3	〃	이*영	1976년	여	다산동
4	이 사	박*경	1956년	여	다산동
5	〃	정*주	1981년	여	다산동
6	〃	정*혜	1977년	여	다산동
7	〃	심*연	1976년	여	오남읍
8	〃	방*혜	1983년	여	진접읍
9	〃	박*영	1979년	여	다산동
10	〃	허*희	1981년	여	가평군
11	〃	배*향	1980년	여	다산동
12	〃	윤*미	1972년	여	다산동
13	〃	이*길	1986년	남	구리시(관내 직장)
14	〃	강*환	1958년	여	서울시(관내 직장)
15	감 사	박*종	1988년	남	다산동
16	〃	이*롱	1998년	여	다산동

○ 대의원 명단

연번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1	회 장	양*경	1953년	여	다산동
2	대의원	길*남	1978년	여	진접읍
3	〃	허*민	1974년	여	다산동
4	〃	서*이	1979년	여	화도읍
5	〃	박*경	1972년	여	오남읍
6	〃	김*옥	1984년	여	진접읍
7	〃	김*수	1979년	남	오남읍
8	〃	황*미	1978년	여	진접읍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 승격 승인(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5호	안건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 승격 승인(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의결주문 :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 승격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2호 제9호

3.제안사유 :

남양주시체육회 준회원 단체 중, 정회원 승격 기준을 충족한 종목 단체에 대하여, 정회원단체로 승격하여 종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주요골자

연 번	단체명	회 장	임원현황	단체현황	활동 이력
1	주짓수회	이형우	총 18명	10개 클럽 310명	15~16회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2	수중핀수영협회	황동훈	총 16명	8개 클럽 110명	2019년 ~ 현재 남양주시 수질 환경보호 활동 진행 (스킨스쿠버)

5.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안)

◇ 남양주시체육회 준회원 단체 중, 정회원 승격 기준을 충족한 종목단체에 대하여, 우리시 체육회 정회원단체로 승격하여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6조(조직)

◈ 남양주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 제7조(심의절차)

2 검토결과

○ 대　　상 : 2개 단체(주짓수회, 수중핀수영 협회)

<table>
<tr><th colspan="5">주짓수회</th></tr>
<tr><td rowspan="6"> </td><td>성　　명</td><td>이 형 우</td><td>생년월일</td><td>83. 02. 19.(39세)</td></tr>
<tr><td>최종학력</td><td>건국대학교 체육교육대학원 졸업</td><td>직　　업</td><td>이온 주짓수 관장</td></tr>
<tr><td>주　　소</td><td colspan="3">남양주시 늘을 3로 8, 607-504</td></tr>
<tr><td>임원현황</td><td colspan="3">총 18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3명, 감사 2명)</td></tr>
<tr><td>대의원현황</td><td colspan="3">10개 클럽 310명</td></tr>
<tr><td>연 혁</td><td colspan="3">· 前 남양주시주짓수회 회장</td></tr>
<tr><th colspan="5">수중핀수영협회</th></tr>
<tr><td rowspan="6"> </td><td>성　　명</td><td>황 동 훈</td><td>생년월일</td><td>1980. 08. 23.(42세)</td></tr>
<tr><td>최종학력</td><td>용인대유도학과 중퇴</td><td>직　　업</td><td>DH인테리어도배 대표</td></tr>
<tr><td>주　　소</td><td colspan="3">화도읍 먹갓로서길 38-1 나동 205</td></tr>
<tr><td>임원현황</td><td colspan="3">16명(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1명, 감사 1명)</td></tr>
<tr><td>대의원현황</td><td colspan="3">8개 클럽 110명</td></tr>
<tr><td>연 혁</td><td colspan="3">· 前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유도)(2007~2008)
· 前 남양주체육회 근무(2010~2014)</td></tr>
</table>

○ 승격대상 세부현황

구 분	남양주시주짓수회	남양주시수중핀수영협회	비 고
최초 가입일	2019년도 정기이사회(‘19. 1. 29.)	2019년도 임시이사회(‘19. 10. 30.)	
경과기간 (23. 1월 기준)	3년 11개월 경과	3년 2개월 경과	
클 럽 수	10개 클럽 310명	8개 클럽 110명	
활동이력	제15, 16회 남양주시장기 대회	2019년 ~ 현재 남양주시 수질 환경보호 활동 진행	

○ 검토결과

- 주짓수 및 수중핀수영 가입일 **2년경과에 따라 정회원 승격 심의자격 충족**됨.
- 주짓수회는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수중핀수영협회는 **우리시 수질 환경 보호 캠페인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협회의 활동이 지속** 되고 있음.
- 또한 주짓수 및 수중핀수영은 **남양주시체육회 총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활발한 체육회 활동을 함.**
- 이에, 금번 정기총회 개최 시 **주짓수 및 수중핀수영의 정회원 단체 승격으로 우리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남양주시체육회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안건 상정(안)

부의안

의안번호	제6호	안건 종류	☑ 의결사항 □ 보고사항	
건 명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 안건 상정(안)		제 안 자	사무국장

1.의결주문 :

2023년도 정기총회 안건 상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부의근거 : 남양주시체육회 정관 제18조 제2항 제7호

3.제안사유 :

2023년 정기총회 안건 상정(안)의 적정여부 심의 하고자 함.

4.주요골자

- 일 시 : 2023. 2. 15.(수) 11시
- 참석대상 :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장(59명)

· 종목단체 43개, 읍면동체육회 16개

- 장 소 : 미정

· 부의안건(심의안건)

1) 2022년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예산(안) 심의·의결
2) 남양주시체육회 임원선임(안) 심의·의결
3) 남양주시체육회 감사선출(안) 심의·의결
4) 남양주시체육회 임원증원(안) 심의·의결
5)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승인(안) 심의·의결
6)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정회원단체 승격 승인(안) 심의·의결

5.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

2023년 정기총회 개최 계획(안)

1 개 요

○ 일 시 : 2023. 2. 15.(수) 11시

○ 참석대상 :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단체 장(59명)**

- 종목단체 43개, 읍면동체육회 16개

○ 장 소 : 미정

○ 부의안건(심의안건)

1) 제1호 2022년도 사업결과 및 수입 · 지출결산(안) 심의 · 의결
2) 제2호 남양주시체육회 임원선임(안) 심의 · 의결
3) 제3호 남양주시체육회 감사선출(안) 심의 · 의결
4) 제4호 남양주시체육회 임원증원(안) 심의 · 의결
5) 제5호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승인(안) 심의 · 의결
6) 제6호 남양주시체육회 회원단체 정회원단체 승격 승인(안) 심의 · 의결

2 시간계획

시 간		소요시간(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1:00	-	-	개 회	사 회 자
11:00	11:01	1	나라사랑의식	일 동
11:01	11:05	4	인 사 말 씀	체육회장
11:05	11:45	40	안건별 제안설명 및 심의 · 의결	사무국장 일 동
11:45	-	-	폐 회	사 회 자